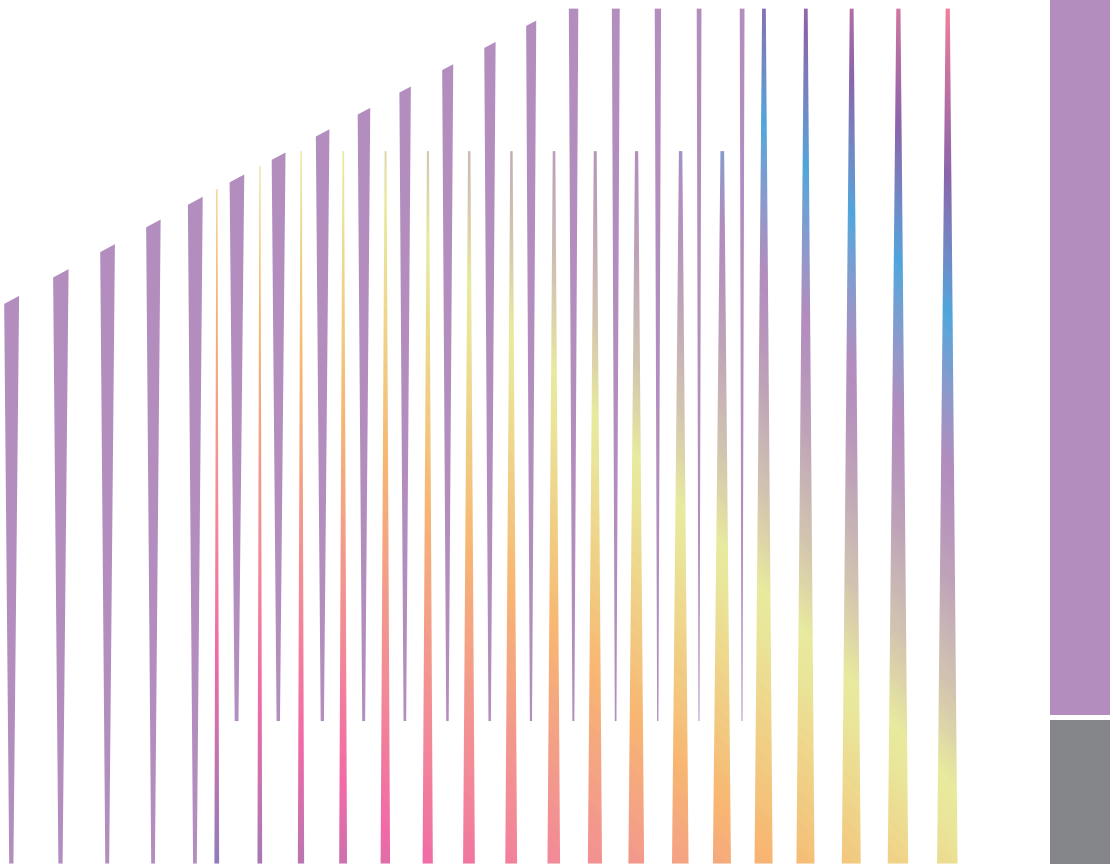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

권성오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

2022. 12.

권성오



# 서 언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 문제가 지적되었다. 2018년 기준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즉, 고소득 사업자의 실제소득 중 신고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전통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제한된 인적자원,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있고, 성실사업자 우대와 같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는 소수의 납세자만 이용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도입되었다.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납세순응제도와 차별화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에게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후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그와 연관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제도 검토를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였고, 신고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표본크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Saez(2010) 이후 재정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집군추정법을 사업자의 행태반응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와 집군추정법을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행태가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과세자료의 다양한 변수를 이용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과표양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권성오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저자는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 세미나에서 조언을 해준 원내외 전문가와 익명의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연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양한 의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나영 연구원, 그리고 최종 출판까지 행정지원을 해준 본원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2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2011년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납세순응제도와 차별화된다. 정부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그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 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외부조정대상자이다. 즉,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다. 이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게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과표양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더욱이 현 제도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하여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도대상자의 행태반응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순응에 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notch에 기반한 집군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제II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검토하였고 본 연구의 주제 및 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

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 취지대로 과표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제도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사전검증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내릴 유인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가 제도대상 기준금액 좌측에 몰리는 집군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모든 개인사업자가 제도에 반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입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축소할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조세회피나 탈세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따른 징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수입금액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 조정 비용 및 수입금액과 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에서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집군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군 구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총수입금액을 평균적으로 1.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 기준금액이 변화할 경우 집군도 그에 상응하여 관측되는 강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미한 행태반응은 잠재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없었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행태반응은 더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동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제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 등 조정 비용 때문에

행태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한도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비용 전액이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

행태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계점 좌우의 성실신고확인 여부와 필요경비 등을 비교하였다. 먼저, 경계점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입금액 분포에 나타난 집군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경계점 직전 구간에서 10% 수준이고 경계점이 포함된 구간부터 80% 수준으로 급등한다. 총수입금액이 경계점보다 1억원 이상 크면 90% 정도가 성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군 구간을 제외하고 경계점 좌우의 평균 필요경비를 비교해 본 결과, 경계점 좌측 추세의 연장선에 비하여 경계점 우측의 필요경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필요경비를 적게 신고한다는 descriptive evidence로 볼 수 있다. 사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보다는 비용 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수입의 경우 신용카드 활성화와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어느 정도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졌으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현금거래로 인한 비노출수입의 경우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반사실적 상황(counterfactual)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결과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구간 평균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도와 관심변수 간 인과관계를 식별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총수입금액을 조정한 사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집군 구간의 표본을 제외하면서, 총수입금액이 상당히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실신고확인제도 외에 다른 집단 간 차이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 목 차

I. 서론 .....	1
II.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	3
1. 제도 개요 .....	3
가. 배경 및 대상 .....	3
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7
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8
라. 성실사업자 우대 제도와 성실납세 협약제도 .....	9
마. 대형 납세자 전담조직 .....	10
2. 선행연구 .....	11
가. 회귀단절모형 .....	11
나. 집군분석 .....	13
다. 무작위통제실험 .....	20
III. 실증분석 .....	26
1. 집군분석 .....	28
2. 구간 평균(bin averages) .....	39
IV. 마치는 글 .....	46
참고문헌 .....	48
부록 .....	51

## 표목차

〈표 Ⅱ-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4
〈표 Ⅱ-2〉 성실신고확인신고자 규모 및 추이 .....	5
〈표 Ⅱ-3〉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	7
〈표 Ⅱ-4〉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	8
〈표 Ⅲ-1〉 총수입금액 경계점 부근 표본 기초통계 .....	27
〈표 Ⅲ-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변천 .....	28

## 그림목차

[그림 II-1] Sanchez(2014)의 회귀단절모형 분석 결과: 과소 신고액에 따른 정책대상 여부 확률	12
[그림 II-2] Sanchez(2014)의 회귀단절모형 분석 결과: 과소 신고액에 따른 납부세액	12
[그림 II-3] 종합소득세 한계세율(2019년 귀속)	14
[그림 II-4] 취득세 평균세율(2019년 귀속)	14
[그림 II-5] 한계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납세자 예산제약선	15
[그림 II-6] 한계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집군	16
[그림 II-7] Chetty et al.(2011)의 집군분석 결과	17
[그림 II-8] 평균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납세자 예산제약선	18
[그림 II-9] 평균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집군	18
[그림 II-10]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5)의 집군분석 결과	19
[그림 III-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총수입금액 분포	29
[그림 III-2]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등’의 2015~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30
[그림 III-3]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의 2015~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31
[그림 III-4]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점 대비 총수입금액 분포	32
[그림 III-5] 업종 구분별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점 대비 총수입금액 분포	33
[그림 III-6] 집군분석 결과(전체 표본)	36
[그림 III-7] 업종별 집군분석 결과	37
[그림 III-8] 시기별 집군분석 결과	38
[그림 III-9] 경계점 좌우 성실신고확인 여부 변화	41
[그림 III-10] 경계점 좌우 필요경비 변화	43
[그림 III-11] 부가가치세 자료를 연결한 분석	45

---

## I. 서론<sup>1)</sup>

---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소득 사업자<sup>2)</sup>의 소득적출률은 53.4%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고소득사업자의 실제소득 중 신고 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의 비중이 53.4%인 것이다. 물론, 기획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의존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소득 대비 조세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up>3)</sup>

정부는 2011년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납세순응제도와 구별된다. 정부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징계 등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도입될 때부터 그 실효성을 비판받아 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이다. 즉,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다. 이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

---

1) 본 보고서는 본 연구의 초안으로 작성한 권성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재정포럼』, 제297호, 2021. 3., pp. 8-25; 권성오,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 검토」, 『재정포럼』, 제289호, 2020. 7., pp. 28-47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2) 고소득사업자는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들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자,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자, IT 관련 업자, 신종 호황 분야 업자, 문화·스포츠 분야,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포함된다.

3) 국세청의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와 경정자료를 이용한 안중석·강성훈·오종현(2017)에서는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에서 과소신고 겹 발생 가능성과 소득 대비 과소신고 세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는 사업자에게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과표 양성과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더욱이 현 제도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그와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다. 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도대상자의 행태반응에 대한 실증연구는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순응에 관한 문헌에 기여한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notch에 기반한 집군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 제IV장에서는 본문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

## Ⅱ.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

### 1. 제도 개요

#### 가. 배경 및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 본인이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sup>4)</sup>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것으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비율 제도를 통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매입비용,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인정하고 주요 경비 이외의 비용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그중에서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볼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구분되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다.

---

4) 단, 전문직 사업자는 이러한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표 II-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육탕업	1억 5,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주: 1)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2) 육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자료: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rm/cntrnts/cntrntsView.do?mi=2230&cntrntslid=7669>, 검색일자: 2022. 11. 11.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세무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sup>5)</sup> 따라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와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으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sup>6)</sup> 서론에서 언급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고소득 사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사전적 확인을 통해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 일정 요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은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6)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원칙적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방식 대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적 비교를 통해 추계방식이 세금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 4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

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sup>7)</sup>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비용 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현금영수증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으로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투명하게 드러났지만,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서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신설된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금액이 점차 인하되면서 제도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도 제도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표 II-2>를 보면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신고자는 21만명에 이른다.

<표 II-2> 성실신고확인신고자 규모 및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실신고 확인신고자(A) <sup>1)</sup>	67,937 (4.1)	132,602 (95.2)	138,095 (4.1)	144,985 (5.0)	150,559 (3.8)	208,670 (38.6)	213,059 (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B)	4,564,682	5,052,552	5,482,678	5,874,671	6,393,891	6,911,088	7,469,635
성실신고 확인신고비율(A/B) <sup>2)</sup>	1.5	2.6	2.5	2.5	2.4	3.0	2.9

주: 1)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 성실신고확인신고비율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통계가 필요하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 대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통계 활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https://taxis.ni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11. 1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②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의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하 농림어업 등): 15억원
- ② 제조업, 음식 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이하 제조업 등): 7.5억원

7) 이때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다.

- ③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하 부동산 임대업 등): 5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1)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법인 전환 후 3년 이내)<sup>8)</sup> 및 2)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규모법인을 의미한다.

- ① (업종)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 ②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③ (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각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sup>9)</sup>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된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에 사업장 기본사항, 주요 사업내역 현황,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수입금액 검토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의 각 항목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확인하여 서명한다.<sup>10)</sup>

8)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은 제외

9)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 1.~6. 30.까지 함

10) 예시: “신고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sup>11)</sup> 공제세액의 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이다. <표 II-3>을 보면, 2011년 본 제도가 신설된 이후 조세지출 감면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조세지출 감면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공제규모는 2012년 503억원에서 2015년 1,0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며 2020년에는 1,9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공제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 4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 II-3>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득세	신설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898	1,963
법인세	-	-	-	-	-	-	-	0	46	73
합계	0	502	491	496	1,012	1,049	1,095	1,160	1,944	2,036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조세지출예산서』, 2011~2022,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 검색일자: 2022. 11. 1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외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sup>12)</sup>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된다.<sup>13)</sup>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sup>14)</sup>

11) 단,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과세표준(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전액 추징된다.

12) 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3

## 다.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과태료, 직무정지 등이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sup>15)</sup>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대리인에게 과태료, 직무정지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허위확인 금액 크기에 따라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직무정지 2년까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표 II-4〉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허위확인 금액	징계 양정
5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 ~ 직무정지 2년
1억원 이상	직무정지 3월 ~ 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억원 미만	견책 ~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구재이(2015), p. 103 〈표 II-8〉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되고,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된다.

## 라. 성실사업자 우대 제도와 성실납세 협약제도

성실사업자 우대 제도와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두 제도 모두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구별된다. 먼저 성실사업자 우대 제도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써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하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면서 전체 거래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개인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 대신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sup>16)</sup> 특히,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복식부기를 기록·관리하고, 수입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성실사업자 우대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재이, 2015).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는 국세청과 적절한 세무통제 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이 세무문제를 사전협의·해결하는 제도

16)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의 내용〉

구분	특별세액공제
상용근로소득자	항목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중 선택 <sup>*A</sup> - 항목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sup>*B</sup> 및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 MAX(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A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중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가능

\*B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요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③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갖춘 자

이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는데,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신청대상은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의 법인이다. 성실납세이행협약이 체결되면, 국세청과 대상 법인은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협의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친화적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한 법인에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 법인의 납세성실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감소하며,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마. 대형 납세자 전담조직<sup>17)</sup>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과세당국의 감시가 엄격해지는 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대형 납세자(Large taxpayer)에 대한 과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있는데, 이때 대형 납세자는 사업체 규모 등이 특정 경계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나라마다 과세 당국이 대형 납세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은 상이하다. 주로 매출액, 자산규모, 연간 세금 총액, 사업 부문,<sup>18)</sup> 직원 수 등이 사용되는데, 각 나라의 구체적인 기준은 <부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형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 특징이 있다. 첫째, 대부분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상장 기업이며, 소수의 대형 납세자가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진다. 둘째, 여러 운영 주체 및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 많은 거래량 및 직원, 넓게 퍼진 지리적 특성 등으로 사업 및 세금 거래가 복잡하다. 셋째, 주요 역외 활동,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회계감사, 회계 기준에 따른 이익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세 관련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많은 대형 납세자들이 세무계획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대형 납세자 전담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형 납세자 전담조직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모두 관리하여 납세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서비스와

17) OECD, *Tax Administration 2015*, 2015.

18) 은행, 보험, 광업, 석유 등 해당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

검증 기능을 모두 제공하며, 대형 납세자의 국세와 규정 준수 위험관리에 상당한 자원을 할애하고 있다. 과세 당국과 대형 납세자의 소통을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account manager)가 존재하며, 협력적 납세순응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trategie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무, 회계 외에도 산업, 경제, 국제조세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가 속해 있다.

## 2.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납세순응,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최근의 실증연구를 검토한다. 방법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회귀단절모형, 집근추정법, 무작위통제실험을 이용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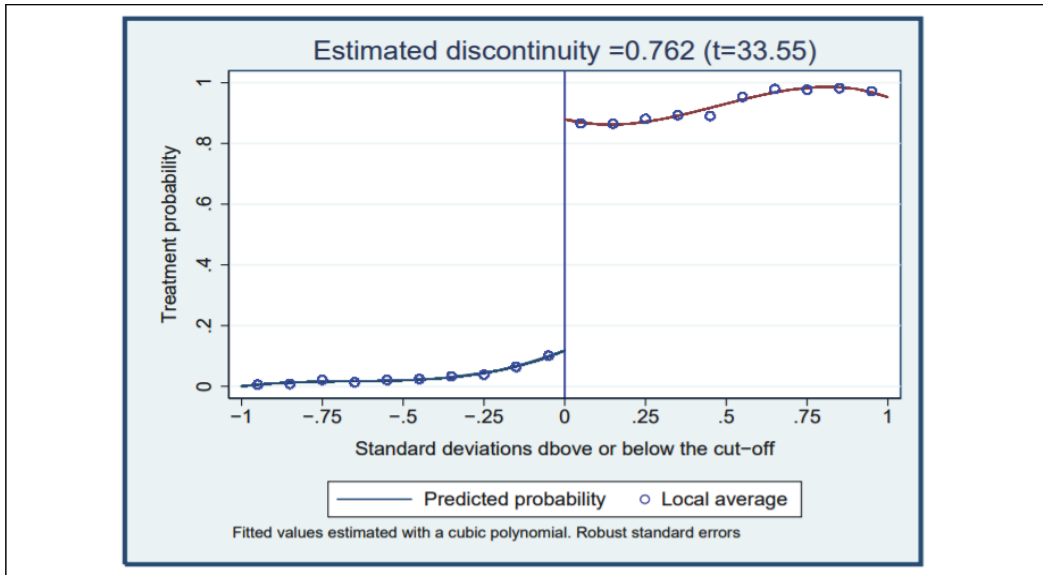
### 가. 회귀단절모형

최근 행정 미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회귀단절모형과 집근분석이 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 실증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두 방법론 모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점을 활용하며 단절점 부근에 많은 관측치수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회귀단절모형은 특정 단절점을 경계로 정책 수혜 및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단절점 부근의 경제주체들이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단 이 모형을 통해 정책효과를 식별하려면 경제주체가 기준 변수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Sanchez(2014)는 회귀단절모형을 이용하여 에콰도르의 납세독려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에콰도르 과세당국은 법인 및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과 과세당국이 추정한 소득의 차이를 과소 신고액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특정 경계점을 넘어서면 신고내용을 수정하도록 통지한다. 이때 납세자가 구체적인 과소 신고자 식별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 신고액 경계점 바로 위와 아래에 있는 납세자들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경계점 바로 위와 아래의 납세자들을 비교하면 해당 정책의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Sanchez(2014)에 따르면 이러한 통지는 납부세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에서 수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소 신고액 경계점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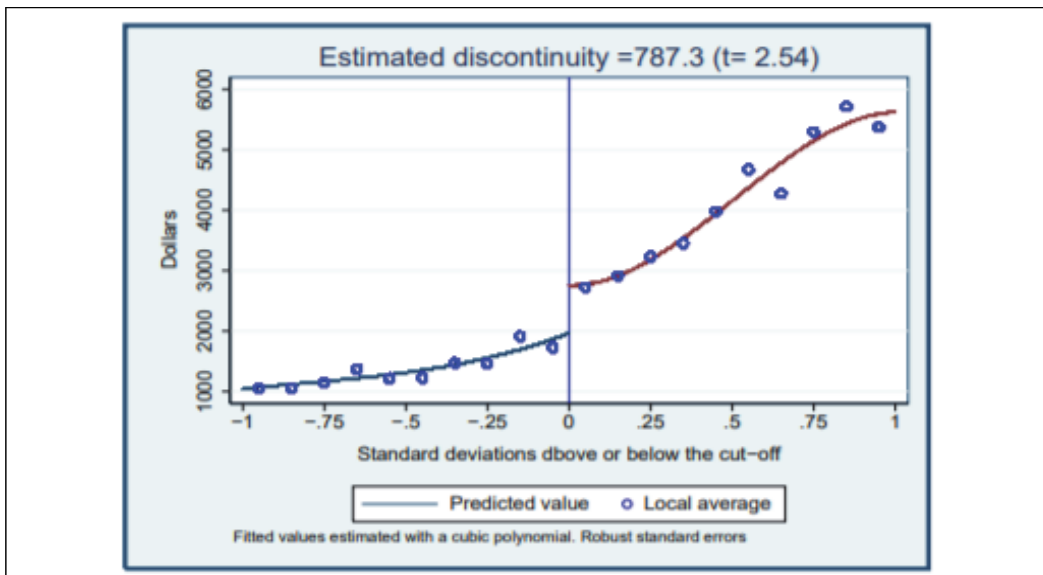
경계점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이 될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림 II-2]를 보면  
 경계점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 Sanchez(2014)의 회귀단절모형 분석 결과: 과소 신고액에 따른 정책대상 여부 확률



자료: Sanchez(2014), p. 25, Figure 2

[그림 II-2] Sanchez(2014)의 회귀단절모형 분석 결과: 과소 신고액에 따른 납부세액



자료: Sanchez(2014), p. 26, Figure 4

납세불순응에 대한 실증연구 중에 회귀단절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는 회귀단절모형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회귀단절모형은 단절점 부근의 경제주체들이 정책 대상 여부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만약 경제주체들이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단절점을 알고 있고 본인의 위치를 단절점 초과 혹은 미만 구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회귀단절모형은 정책의 순효과를 식별할 수 없다. 조세 분야의 정책, 제도에서는 납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그 대상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귀단절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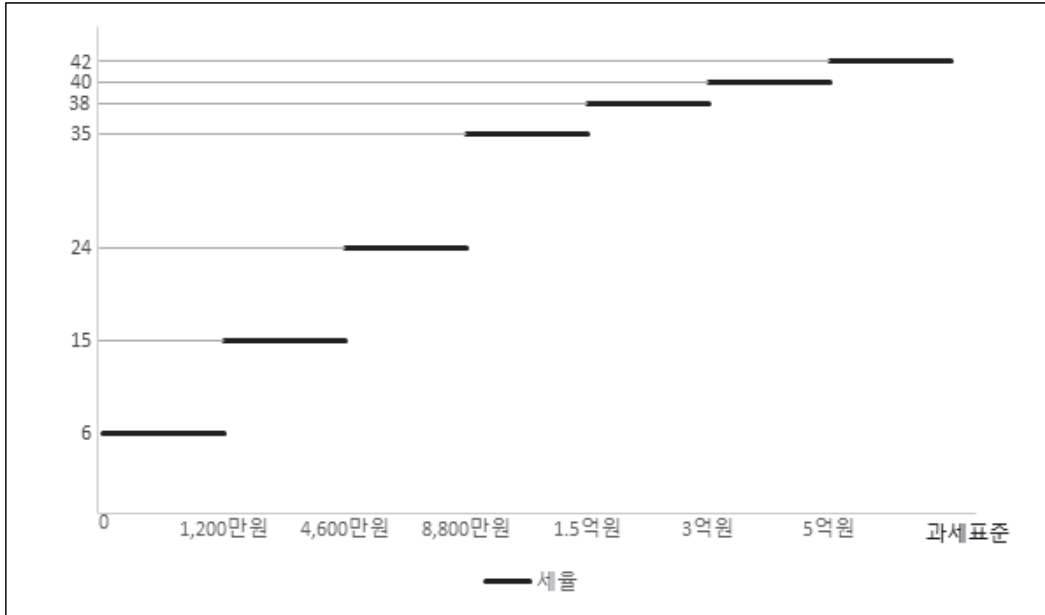
## 나. 집근분석

집근분석은 경제주체가 경제적 유인을 결정하는 기준 변수를 조작할 수 있다면 경제점 부근에 특정한 반사실적 분포를 가정하고 그것과 실제 관측되는 분포를 비교하여 경제주체의 반응 정도를 측정한다. 특정한 가정하에 경제점 주변에 나타나는 집근의 크기가 클수록 경제주체가 해당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집근분석은 연금, 보험, 환경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세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Kleven, 2016). 선행연구에서는 집근분석을 이용하여 세재개편으로 인한 효율비용, 최적세율 등을 분석한 바 있다(Kleven, 2016).

조세 분야의 집근분석은 크게 kink 혹은 notch를 이용하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kink와 notch는 각각 세제로 인해 나타난 납세자 선택집합(choice sets)의 기울기(slope)와 수준(level) 변화를 의미한다. 세율에 대한 행태반응을 예로 들면 한계세율이 변하는 경우(예: 종합소득세, 법인세)에는 kink, 평균세율이 변하는 경우(예: 2019년도 주택 취득세)에는 notch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II-3] 종합소득세 한계세율(2019년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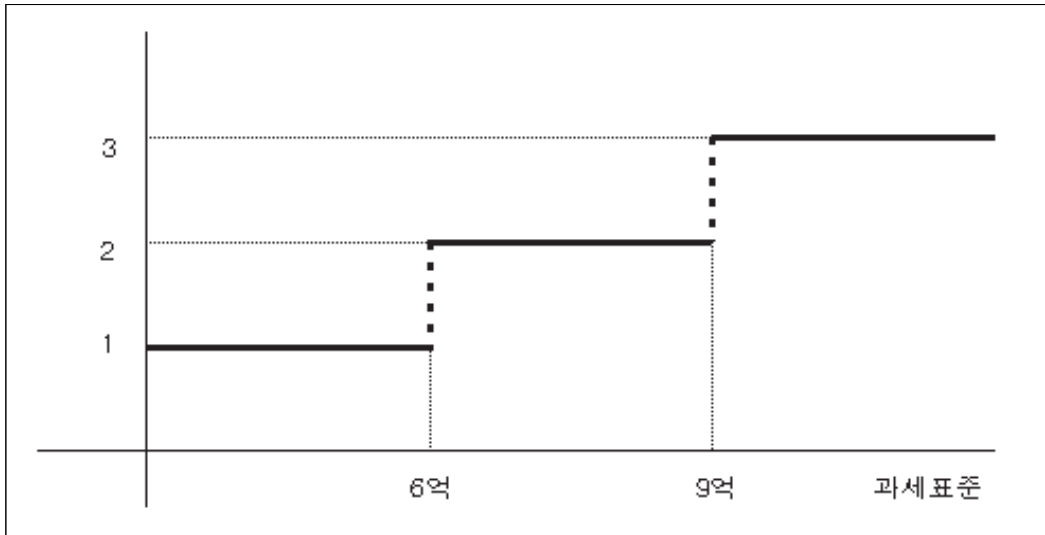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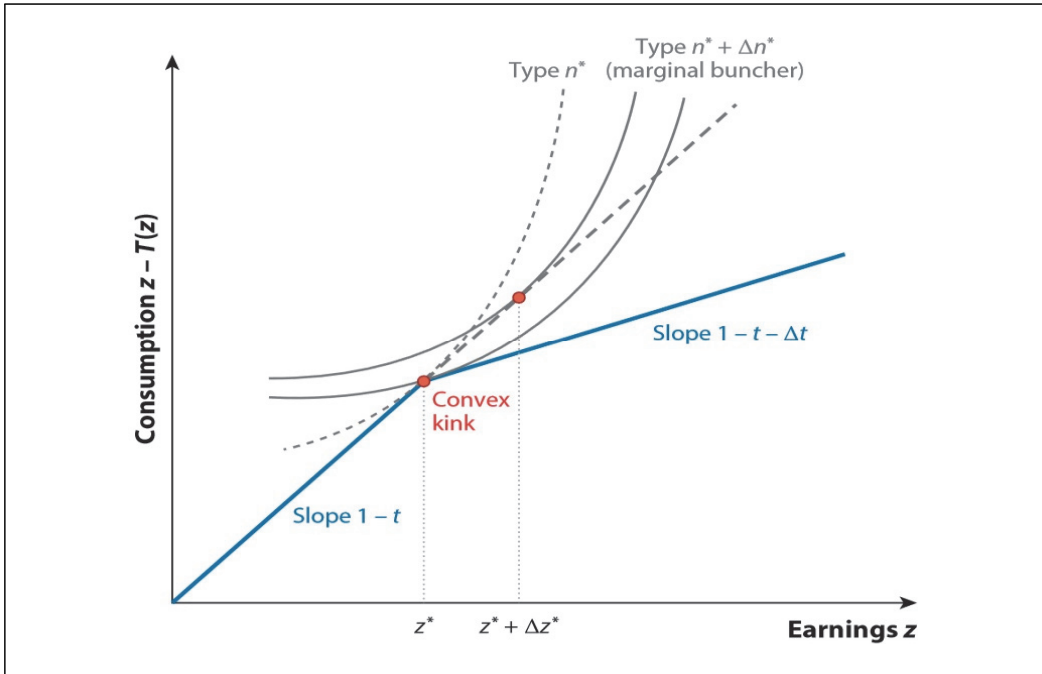
[그림 II-4] 취득세 평균세율(2019년 귀속)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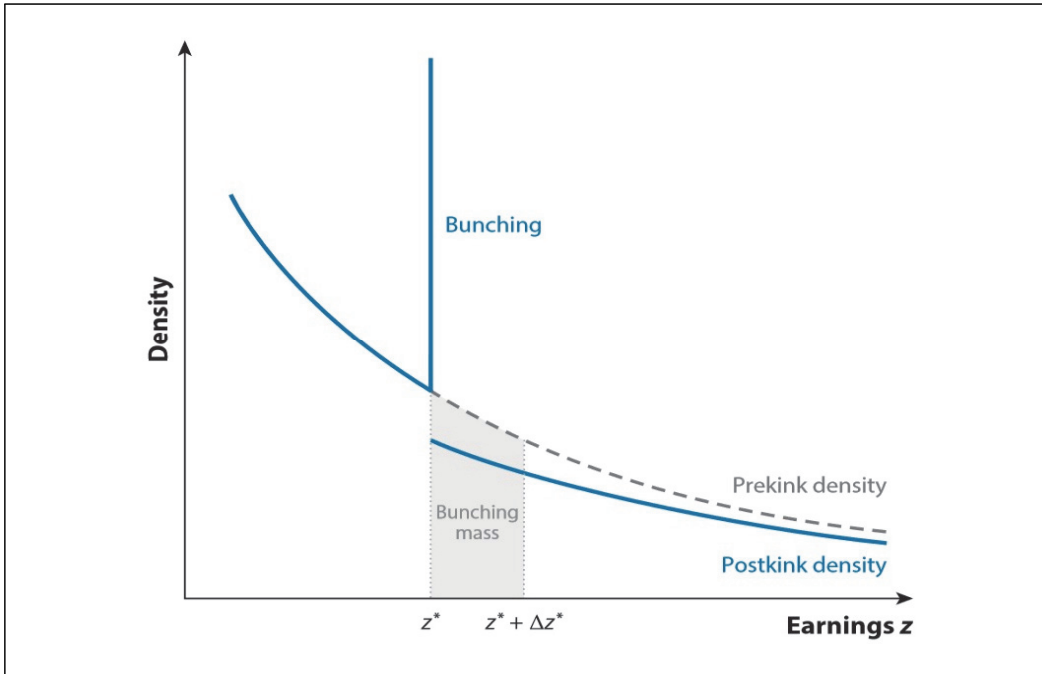
[그림 II-5] 한계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납세자 예산제약선



자료: Kleven(2016), p. 439, Figure 1a

[그림 II-5]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변하여 납세자 선택집합에 kink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z^*$  이하의 소득에는  $t$ 의 한계세율이 부과되고  $z^*$ 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t + \Delta t$ 의 한계세율이 부과되는 초과누진세제를 가정하였다. 이때 납세자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z^*$ 를 기준으로  $1-t$ 에서  $1-t-\Delta t$ 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경계점 바로 우측에 위치한 납세자들은 과세표준을 그 아래로 감소시킴으로써 효용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물론 납세자의 행태반응은 개인의 선호와 능력, 과세표준 조정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한계세율 변화에 반응하여 경계점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경계점 부근에 집군이 나타난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데 아무런 제약 및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림 II-6]과 같이 단절점 바로 위에 분포가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군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주와의 계약으로 인해 노동시간 및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워 많은 연구에서 집군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I-6] 한계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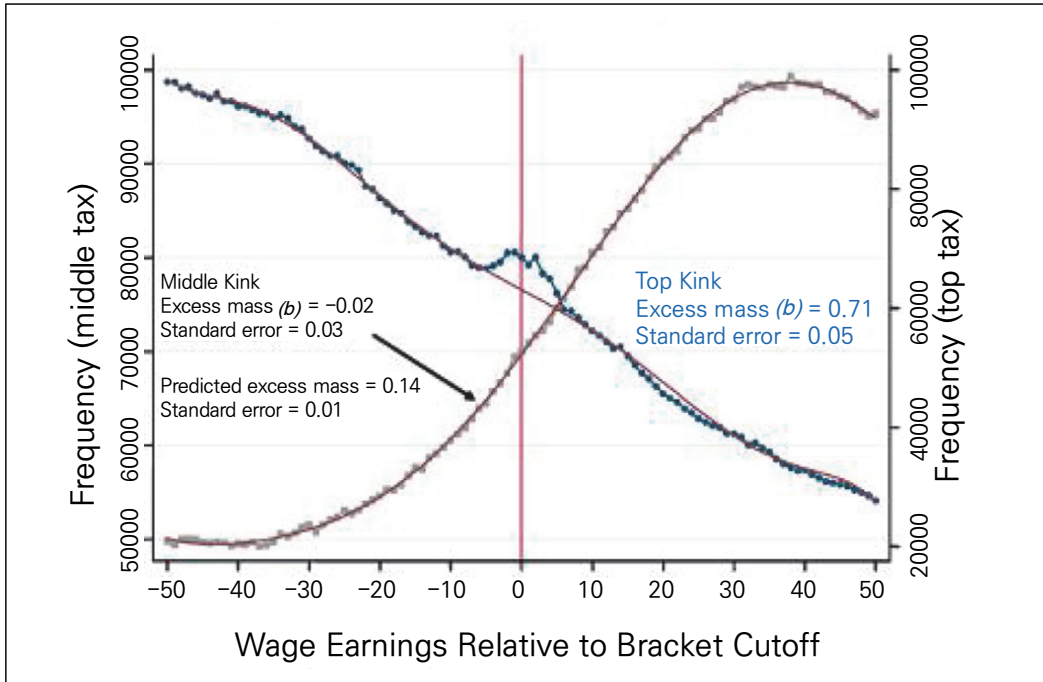


자료: Kleven(2016), p. 439, Figure 1b

덴마크는 개인소득에 대해 초과누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sup>19)</sup> 다수의 실증 연구에서 한계세율이 변하는 지점(kink)에 집군분석을 적용한 바 있다. Chetty et al. (2011)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의 경계점(top kink)에서 유의미한 집군이 나타난다(그림 II-7기 참고). 집군은 자영업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근로소득자에게서도 관측되었다. 그 외로 Le Maire and Schjerning(2013)은 덴마크 자영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집군의 절반 이상은 시점 간 소득이전(intertemporal income shifting)으로 인해 발생함을 보인 바 있다. 최고 과세표준 경계점에 위치한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적용 한계세율을 낮추기 위해 이익 유보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2000년 기준 총 세 개의 과표구간에 45~70%가량의 한계세율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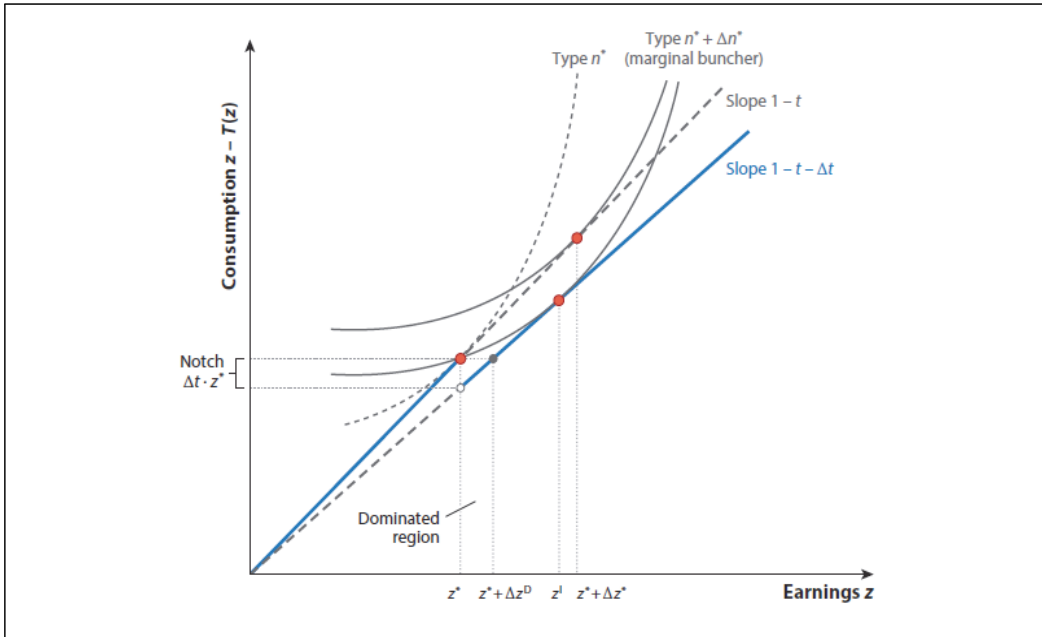
[그림 II-7] Chetty et al.(2011)의 집군분석 결과



자료: Chetty et al.(2011), p. 783, Figure V(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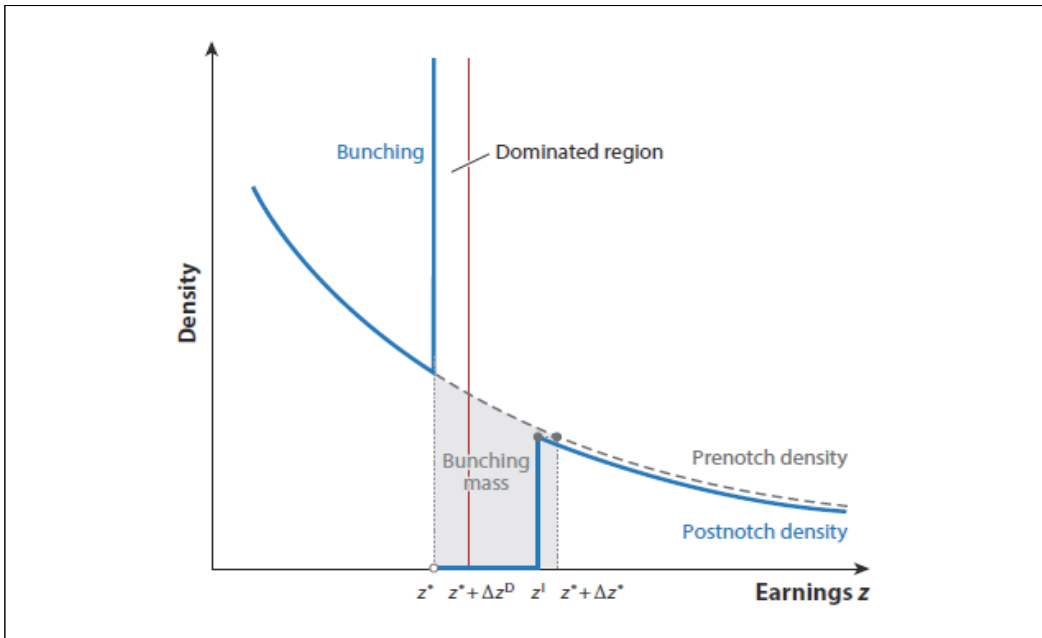
[그림 II-8]은 과세표준에 따라 평균세율이 변하여 납세자 선택집합에 notch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z^*$ 를 기준으로 평균세율이  $t$ 에서  $t + \Delta t$ 로 증가하는 세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은 그림과 같이  $z^*$ 에서 단절된다. 이때  $z^*$  초과  $z^* + \Delta z^D$  미만 구간(a region of strictly dominated choice)에서는  $z^*$ 에 비해 오히려 세후소득 (=소비)이 적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선호, 능력 등과 상관없이 소득을  $z^*$ 로 옮김으로써 소비와 여가 모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z^*$  초과 구간에서 밀도 함수의 공백(hole)이 나타나는데, 한계세율이 변하는 kink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백이 나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평균세율 변화에 반응하여 경계점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경계점 좌측에 집군이 나타난다.

[그림 11-8] 평균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납세자 예산제약선



자료: Kleven(2016), p. 443, Figure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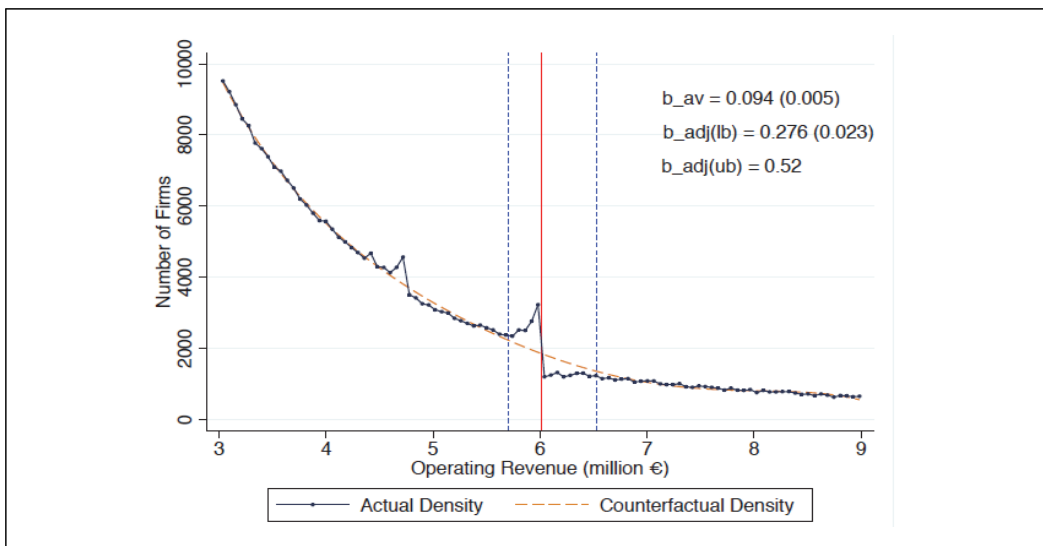
[그림 11-9] 평균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집군



자료: Kleven(2016), p. 443, Figure 2c

평균세율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예: Kleven and Waseem, 2013), 본고의 실증분석에서 참고할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8)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8)는 스페인 과세당국의 감시 강화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스페인은 1995년 Large Taxpayers Unit (LTU)을 설립하여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LTU는 연간 영업수입이 600만 유로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신고서상 불일치 및 오류 사항 등을 검수한다. 거래상대방 또는 은행 등 제3자가 보고한 재무제표 및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불일치 항목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소명 또는 세금납부를 요청한다. 불일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스페인에서는 기업의 영업수입이 특정 경계점을 넘어서면 세무감시 집행강도(enforcement intensity)가 크게 달라진다. 경계점을 기준으로 세율체계 등 납세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notch를 이용하여 세무감시 강화의 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8)는 스페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엄격한 세무감시를 피하기 위해 영업수입을 경계점 아래로 낮춘다는 것을 보였다. [그림 II-10]을 보면 영업수입 경계점 좌측에 기업의 분포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균분석 결과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영업수입의 1.6%를 감소시켰다.

[그림 II-10]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5)의 집균분석 결과



자료: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5), p. 40, Figure 3

## 다. 무작위통제실험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은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되고 시행될 경우 정책과 관심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식별할 수 있어 최근 정책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2017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면서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현장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RCT에서는 실험대상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실험군에게만 정책을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이후에 두 집단의 관심변수 변화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은 무작위로 추첨되었기 때문에 정책대상 및 수혜 여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특징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RCT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 정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무작위현장실험(randomized field experiment)이라고도 불리며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통제실험에 비해 외적 타당도가 높다.

그러나 RCT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RCT는 정책목표가 구체적이고, 성과가 단기적으로 실현되며, 행정 정보를 통해 주요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대조군을 확보하기 용이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박윤수 외, 2018) 조세 분야는 RCT 수행 시 기존의 행정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실험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자료도 잘 구축되어 있어 정책실험이 용이한 영역이다. 이에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선진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르완다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조세 분야의 현장실험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조세 분야에 서 수행된 다양한 RCT를 납세순응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 1) 탈세 역제의 전통적 요소들: 세무조사와 벌금

조세 분야 실험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정책수단은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벌금에 대한 통지이다. 예를 들어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통지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Slemrod et al., 2001). 1995년 1,500명이 넘는 실험 대상자에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조사 결과 신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과거의 납세내역도 조사될 수 있음이 통지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세무감시 비율과 같은 조세 매개변수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편지를 받은 중저소득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lemrod et al., 2001).<sup>20)</sup>

아르헨티나 후닌(Junín)에서는 미납 재산세에 대한 벌금 가능성을 알리는 무작위 통제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Castro and Scartascini, 2013). 이 실험에서는 약 23,000명의 납세자들을 임의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중 세 집단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된 세금 고지서를 배부하였다. 분석 결과 벌금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받은 집단에서만 통제집단에 비해 재산세 체납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sup>21)</sup>

- 첫 번째 실험집단: 미납 재산세에 대한 벌금 통지
- 두 번째 실험집단: 정부재원의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 세 번째 실험집단: 다른 납세자들의 납세행태에 관한 통계

조세실험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지하기 위해 우편을 많이 이용하는데, 납세자들의 주소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우편 이외의 전달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약 2만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 직접 방문 방식의 납세장려 효과를 비교하는 현장실험이 수행되었다(Ortega and Scartascini, 2016). 실험대상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중 세 집단에는 각각 우편,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방문통지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통지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베니아에서 소기업(small firms)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장실험에서는 우편보다는 직접 방문이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oerrenberg and Schmitz, 2015). 이 실험에서는 임의로 선정된 142개 법인 중 80개 법인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지하였고, 30개 법인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sup>22)</sup>

---

20) Slemrod et al.(2001)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21) 통제집단은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 일반적인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22) 나머지 32개 법인은 통제집단으로 아무런 내용도 고지되지 않았다.

## 2) 사회적 규범, 형평성, 도덕적 호소(moral appeal)

사회적 규범 및 도덕성을 강조하는 편지, 세금 고지서도 조세 분야 현장실험에서 자주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스위스 트림바흐(Trimbach) 지역의 과세당국은 임의로 선정한 납세자들에게 조세순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발적 납세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와 납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Torgler, 2004).<sup>23)</sup> 노르웨이에서는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공평성 및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우편을 보내는 실험을 하였다(Bott et al., 2014).<sup>24)</sup> 실험군에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편지를 전달하고 대조군에는 중립적인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이 신고한 소득액은 통제집단이 신고한 소득액 수준보다 두 배가량 많았으며, 특히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한 첫 번째 편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 첫 번째 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때 모든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
- 두 번째 편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세금이 중요하다는 내용
- 세 번째 편지: 단순히 세무조사 계획을 알림

호주에서는 방송 수신료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공평성을 강조하고 도덕성에 호소하는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Fellner et al., 2013). 호주에서 공중파 TV 또는 라디오를 수신하는 가계는 연간 200달러가 넘는 방송 수신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중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실험에서는 약 5만명의 실험대상자들 중 9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객관적 정보, 사회적 메시지, 도덕적 호소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나머지 5%를 대조군으로 설

---

23) "The taxes you pay are vital for maintaining the municipal tasks in Trimbach. If the taxpayers did not contribute their share, our commune with its 6226 inhabitants would suffer greatly. With your taxes you help keep Trimbach attractive for its inhabitants. In Switzerland, contrary to other countries, the citizens have the opportun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This advantage is also reflected in the tax legislation, which stipulates self-declaration by the taxpayers. This Swiss system presupposes that citizens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re ready to maintain the functioning of municipalities, cantons, and the state. With your conscientious tax declaration you contribute to preserving this democratic and liberal structure."

24) 노르웨이 국세청은 제3자(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보고한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금액과 제3자가 보고한 금액의 차이를 추정할 수 있다.

정하였다.<sup>25)</sup> 모든 종류의 편지가 방송 수신료 지불을 증가시켰는데, 객관적인 정보만 담은 편지가 다른 규범적 메시지를 추가한 편지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지방 교회세 납부를 독려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 실험에서는 납세순응의 결정 요인을 본질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을 추정하였다(Dwenger et al., 2016). 본질적 동기는 사회적 규범, 죄책감 등과 관련이 있는 반면, 외적 동기는 금전적 보상, 벌금 등과 관련이 있다, 연구자들은 국세청의 지방 교회세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 대상자들을 내적 동기에 반응하는 집단과 외적 동기에 반응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내적(외적) 동기에 반응하는 집단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회피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실험 당시 독일의 교회세 납부는 순전히 자발적이었음을 이용하여 두 집단을 정의하였다. 위 두 집단에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편지들은 본질적 동기에 반응하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첫 번째 편지: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은 없음을 알림
- 두 번째 편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알림
- 세 번째 편지: 도덕적 가치에 대해 호소하고 성실납세로 인해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지역신문에 이름이 게재될 수 있음을 알림

### 3) Fiscal exchange

납세의식은 납세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fiscal exchange는 납세의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조세실험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Luttmer and Singhal, 2014). fiscal exchange란 납세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개념이다. 르완다에서 진행된 현장실험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통해 교육, 보건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메

---

25) (사회적 정보) “Do you actually know that almost all citizens comply with this legal duty? In fact, 94%-a vast majority of all households-have registered their broadcasting receivers.”(도덕적 호소)“Those who do not conscientiously register their broadcasting receivers not only violate the law, but also harm all honest households. Hence, registering is also a matter of fairness.”

시지를 전달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러한 메시지는 납세순응도를 증가시켰다(Mascagni et al., 2017). 이 실험에서는 우편, 이메일, SMS를 이용하여 아래 중 하나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sup>26)</sup> 모든 메시지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증가시켰으나, 그중 세무감사 계획 및 벌금에 대한 메시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 첫 번째 실험집단: 납부기한 상기
- 두 번째 실험집단: 세무감사 계획 및 벌금
- 세 번째 실험집단: fiscal exchange 강조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는 공공재를 무작위로 배분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공공재 제공 수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Carrillo et al., 2016). 구체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전년도 재산세를 납부한 약 72,000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400개의 인도)를 무작위로 배분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재의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세금을 계속하여 납부할 가능성이 7%p 정도 높는데, 이러한 효과는 3년 이상 지속되었다. 특히 실험 전에 공공재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재 제공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조세체계의 복잡성 및 세무행정

복잡한 조세체계와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은 납세순응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up>27)</sup> 복잡한 조세체계는 세금을 신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납세자들에게 조세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공제사항을 작성하여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를 신청할 경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신청할 때보다 평균적으로 617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납세자들 중 상당수가 다양한 항목을 신고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표준공제를 이용하고 있다.<sup>28)</sup> Benzarti(2015)에 의하면 미국 납세

26) 우편과 이메일에 담긴 메시지는 동일하다. SMS도 비슷한 맥락을 메시지를 전달하나, SMS 특성상 적은 분량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7)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 중소기업 사업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에서는 납세순응비용 증가가 납세순응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Mahangila, 2017).

28) 미국의 상세공제는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와 유사하다.

자들은 상세공제 신청에 필요한 수고가 19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느낀다. 특히 부유한 납세자일수록 공제항목 신고를 통해 얻는 금전적 혜택보다 공제항목을 신고하는 데 드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겨 상세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조세체계에 대한 정보가 적고 유능한 회계사 등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Coolidge(2012)에 의하면 아르메니아와 인도의 비하르(Bihar) 지역의 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5~15%를 납세순응비용으로 소비한다.

세무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정보의 제약이 심한 환경에서는 세무감사 및 벌금에 대한 통지로 납세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Carrillo et al., 2016). 2011년과 2012년 에콰도르 조세 당국은 약 8,000개의 기업에 자진 신고한 수입과 제3자가 보고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리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균적으로 제3자가 보고한 과세소득액이 자진신고 금액보다 24%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세 당국이 실제로 감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의 재산세 신고 자료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세금 징수자(tax collector)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Khan et al., 2016). 세금 징수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이와 같은 보상은 세수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납세자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첫 번째 보상방식이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두 번째 보상방식의 효과는 작았고, 세 번째 보상방식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 번째는 세입에 대한 보상으로서 세금 징수자가 목표 수준 이상의 세입을 달성한 경우 세입 증가분의 일정 비율만큼을 보상으로 제공함
  - 보상의 규모는 세금 징수자 기본 소득의 약 두 배 정도임
- 두 번째 보상은 첫 번째 보상에 납세자들의 만족도와 조세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한 것임
- 세 번째 보상은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우수 세금 징수자에게 고정된 보상액을 분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 Ⅲ. 실증분석

---

정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실신고확인의 납세순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 취지대로 과표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어 제도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에 집군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모든 개인사업자가 제도에 반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입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축소할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조세회피나 탈세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따른 징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수입금액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 조정 비용 및 수입금액과 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비용, 부주의 등의 optimization frictions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분포는 기준금액 좌측으로는 다소 퍼져 있고 경계 우측에도 어느 정도의 빈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제도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한다.<sup>29)</sup>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 좌측에 집군이 관측되는지를 확인한다. 분석기간에 업종별 총

---

29) 법인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동일한 분석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금액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집군의 위치가 기준금액 변화에 상응하여 이동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행태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계점 좌우의 성실신고확인 여부, 필요경비 등을 비교한다.

본 장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2015~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반복횡단면 미시자료(repeated cross-section)이다. 국세통계센터에서는 2015 귀속연도 이후의 자료에 대하여 10%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성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양수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업종, 성실신고확인 여부, 나이, 성별, 도·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 등이다. 경계점 부근 표본의 주요 변수 기초통계는 <표 III-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계점 부근 전체 표본의 관측치수는 16만개이며, 평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6.3억원, 5.4억원 수준이다.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소득률은 17.8%이다. 업종별로는 제도 대상 기준금액이 가장 큰 농림어업 등에서 관측치수는 적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기준금액이 가장 작은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소득률은 낮은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III-1> 총수입금액 경계점 부근 표본 기초통계

(단위: 개, 억원, %)

업종 구분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수입금액	159,109	6.27	4.06
	필요경비	159,109	5.40	4.08
	소득률	159,109	17.82	17.28
농림어업 등	총수입금액	15,205	16.08	2.87
	필요경비	15,205	15.23	3.05
	소득률	15,205	5.35	7.38
제조업 등	총수입금액	59,062	7.34	2.00
	필요경비	59,062	6.63	1.92
	소득률	59,062	9.65	8.37
부동산 임대업 등	총수입금액	84,842	3.76	1.50
	필요경비	84,842	2.77	1.29
	소득률	84,842	25.74	19.09

자료: 저자 작성

# 1. 집군분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업종 분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몇 차례 제도 개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다. 농림어업 등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30억원이었는데 2014년, 2018년에 각각 20억원, 15억원으로 인하되었다. 제조업 등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이 15억원에서 10억원, 7.5억원으로 인하되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은 도입 당시 7.5억원이었으며, 2014년에 5억원으로 인하되었다.

〈표 III-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변천

업종	연간 수입금액(매출)		
	2011~2013 <sup>1)</sup> 귀속	2014~2017 <sup>2)</sup> 귀속	2018 <sup>3)</sup> 귀속 이후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30억원	20억원	15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등	15억원	10억원	7.5억원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억원	5억원	5억원

주: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1. 6. 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3. 6. 1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8. 2. 13.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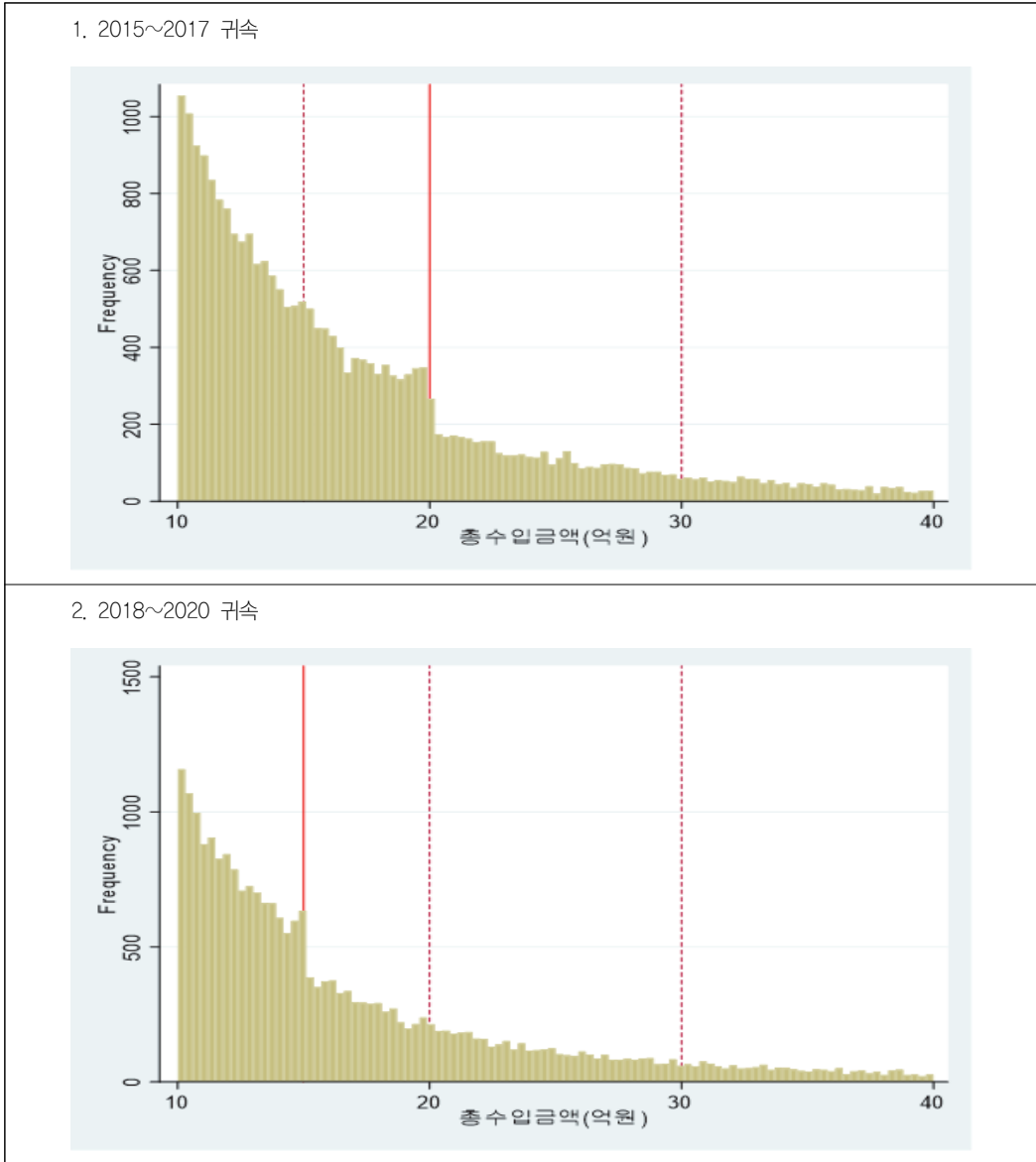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먼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금액이 다른 귀속연도 및 업종을 구분하여 기준점 부근의 총수입금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각 분포에 있는 실선의 수직선은 해당 귀속연도와 업종 분류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의미한다. 점선의 수직선은 다른 귀속연도의 같은 업종 분류에 적용된 기준금액이다.

농림어업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분포를 보면, 2015~2017 귀속연도 표본에서는 당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금액인 20억원 좌측에 분포가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시기의 기준금액인 30억원과 15억원 부근에서는 집군이 나타나지 않는다. 2018~2020 귀속연도 표본에서는 해당 시기의 기준금액인 15억원 부근에서만 집군이 관측된다.

[그림 III-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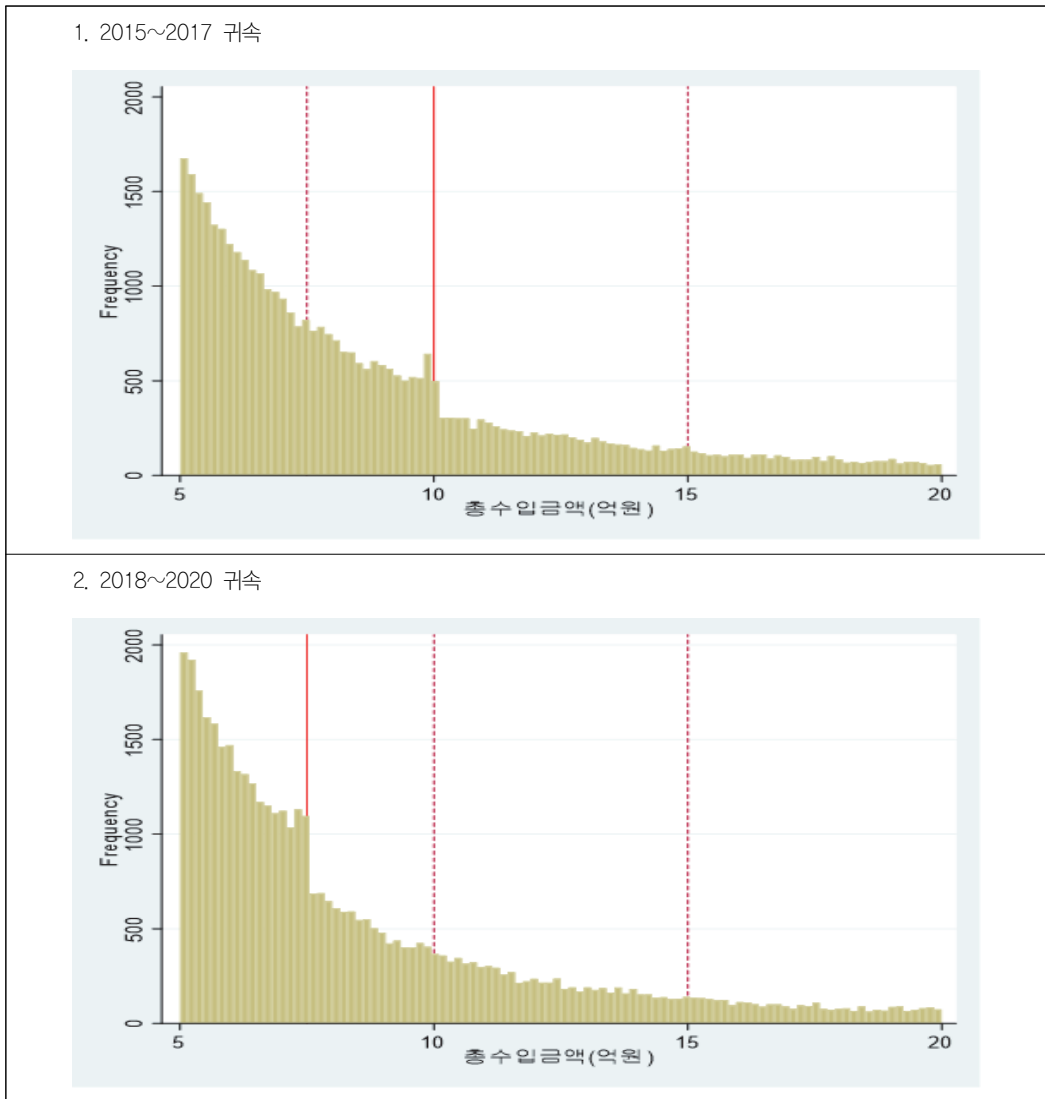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조업 등의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측된다. 즉, 해당 업종과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부근에서만 집군이 관측된다. 제조업 등의 경우 2015~2017 귀속연도 표본에서는 당시 기준금액인 총수입금액 10억원 좌측에 분포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2020년에는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

으로 인하되었는데, 집군도 해당 경계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입금액 기준은 분석기간 내 5억원으로 유지되었는데, 집군도 시기와 관계없이 5억원 부근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일관된 결과는 관측되는 집군이 다른 제도나 여건보다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행태반응임을 뒷받침한다.

[그림 III-2]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등'의 2015~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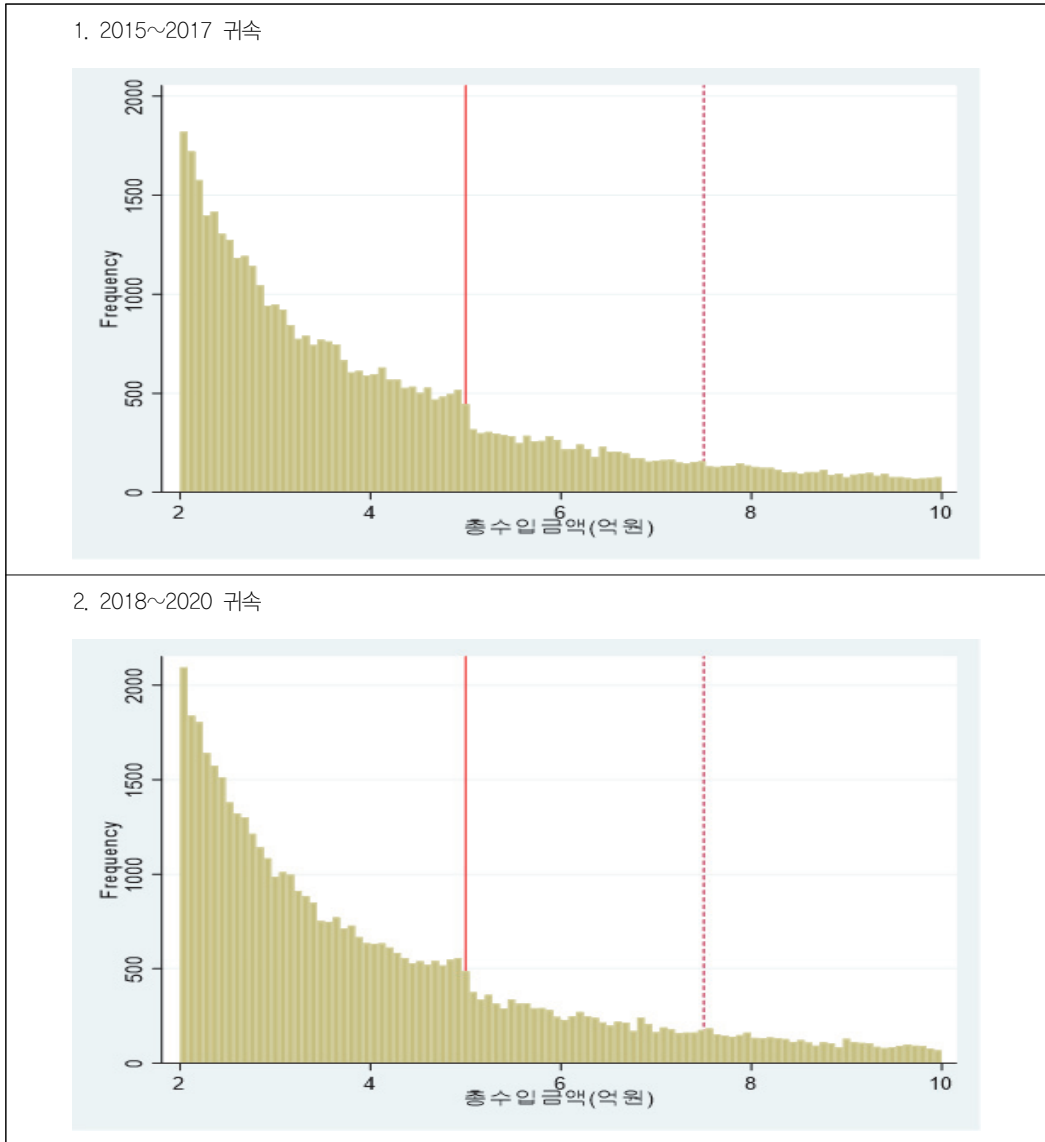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의 2015~2018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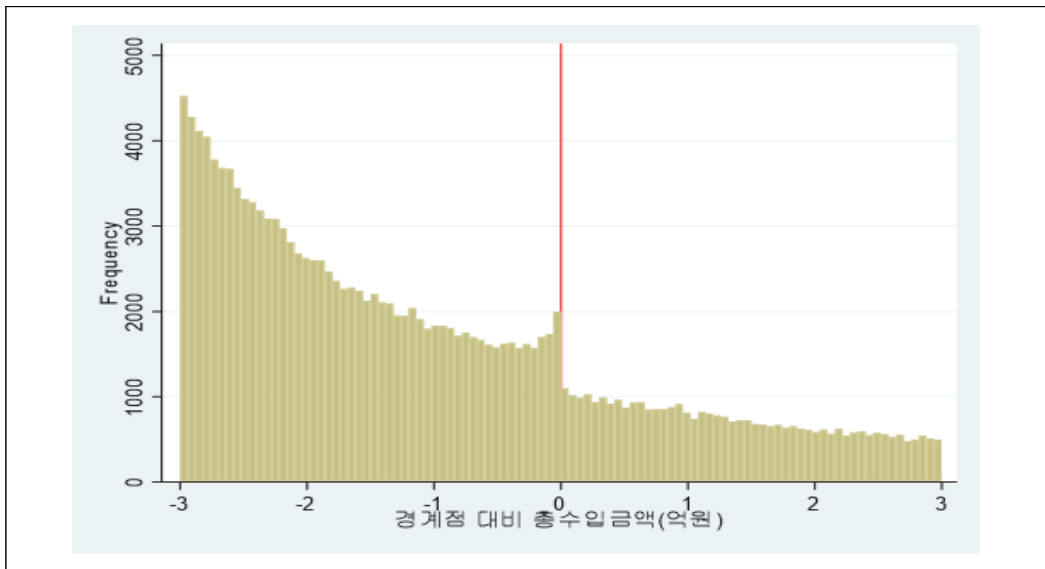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경계점이 다른 업종과 귀속연도의 자료를 통합하여 집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준금액을 0으로 표준화한 총수입금액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종과 귀속연도의 기준금액을 0으로 하고 기준점 좌우로  $\pm 3$ 억원의 분포를 살펴보

았다. 앞선 결과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모든 업종과 귀속연도를 통합하여도 집군이 뚜렷이 나타난다. 다만, 업종별 결과에서 기준 수입금액이 큰 농림어업 등의 경우 경계점 부근에 관측치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분포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업종별로 분포를 비교할 경우 각 분포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에 따라 집군의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집군의 크기를 엄밀하게 정량화하고 추정하는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III-4]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점 대비 총수입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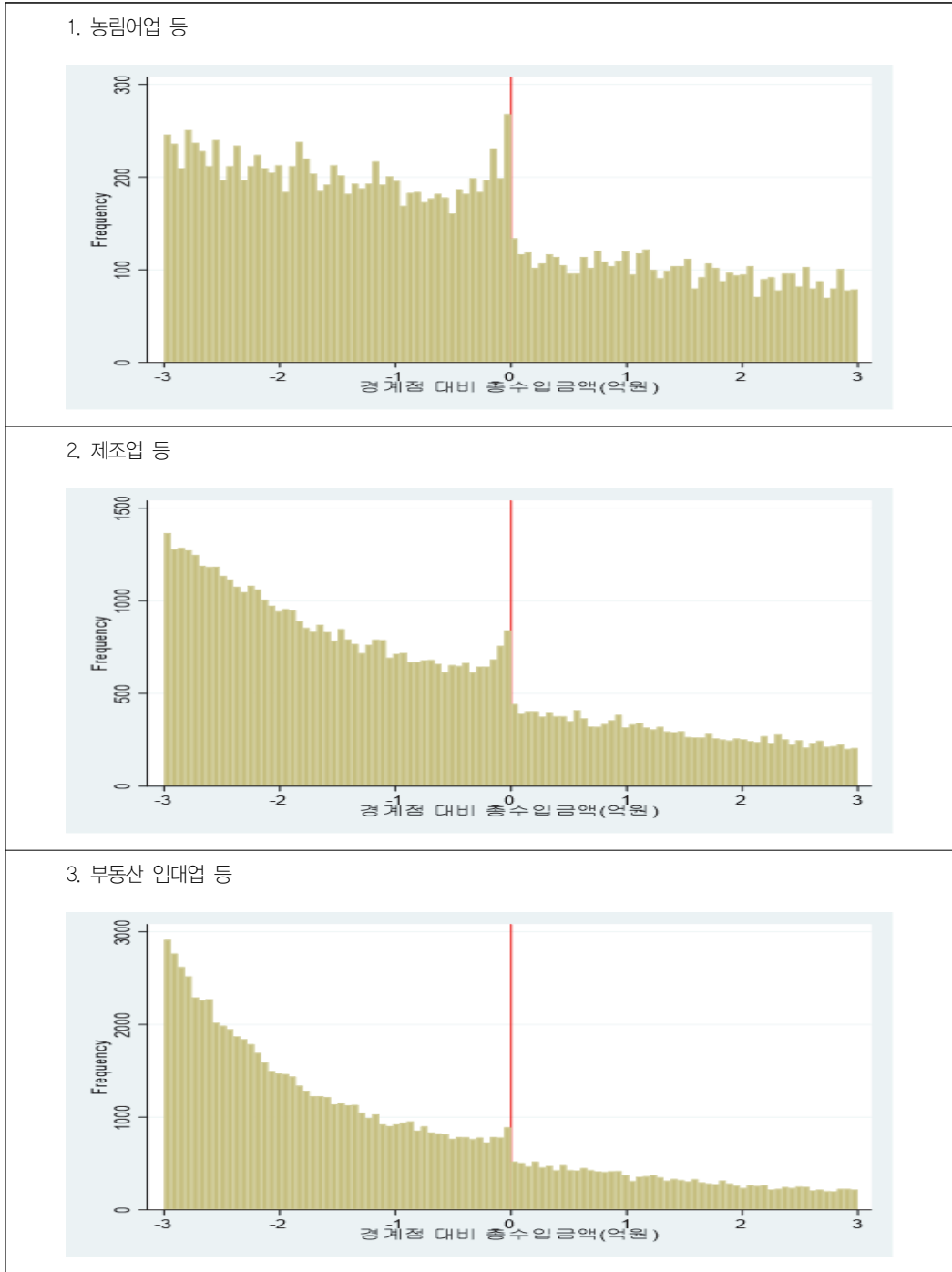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 업종 구분별 성실신고확언제도 기준점 대비 총수입금액 분포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지금부터는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ion)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응하는 정도를 정량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집군 추정법은 단절점이 없을 경우의 반사실적 분포(counterfactual distribution)를 추정하여 실제 분포와의 차이를 집군의 정도로 정의한다. 반사실적 분포는 경계점 부근을 제외한 관측된 분포를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추정한다. 집군의 크기가 크게 나타날 수록 경제주체가 관련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군분석은 크게 kink 혹은 notch를 이용하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Kleven, 2016). kink와 notch는 각각 제도로 인해 나타난 경제주체 선택집합(choice sets)의 기울기(slope)와 수준(level) 변화를 의미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과표가 보다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제도로 인해 notch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8)의 집군추정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집군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먼저 모든 관측치에 대해 경계점 대비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경계점 부근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frequency)를 측정하여 구간 단위의 자료를 구축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다항식을 추정할 수 있다.

$$F_j = \sum_{i=0}^q \beta_i (y_j)^i + \sum_{k=y_{lb}}^{y_{ub}} \gamma_k \cdot 1[y_j = k] + v_j$$

이때  $F_j$ 와  $y_j$ 는 각각 특정 구간  $j$ 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와 경계점( $y^L$ ) 대비 수입금액의 중간값이다.  $q$ 는 다항식의 차수를 의미하며,  $[y_{lb}, y_{ub}]$ 는 반사실적 분포를 추정할 때 제외되는 구간이다. 이 식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반사실적 분포  $\hat{F}_j$ 를 도출할 수 있다.

$$\hat{F}_j = \sum_{i=0}^q \hat{\beta}_i (y_j)^i$$

이러한 반사실적 분포와 실제 분포를 비교하여, 경계점 좌측에서는 excess bunching mass, B, 경계점 우측에서는 missing mass, H를 추정할 수 있다.

$$\hat{B} = \sum_{j=y_{lb}}^{y^L} (F_j - \hat{F}_j) \geq 0$$

$$\hat{H} = \sum_{j=y^L}^{y_{ub}} (\hat{F}_j - F_j) \geq 0$$

선행연구를 따라 행태반응은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즉, B와 H가 같다고 가정한다. Almunia and Lopez-Rodriguez(20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금액 조정을 위해 사업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제  $y_{lb}$ 와  $y_{ub}$ 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y_{lb}$ 는 집군으로 인하여 수입금액 분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는 지점으로 지정한다.  $y_{ub}$ 의 경우 임시로  $y^L$ 로 지정한 다음 그 값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처음의 다항식을 반복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hat{B}$ 와  $\hat{H}$ 가 갖게 될 때의 값을 최종적인 값으로 결정한다.

평균적인 집군 정도를 나타내는  $b_{avg}$ 는 다음과 같이 반사실적 분포의 평균 빈도수에 대비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sup>30)</sup> 표준오차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추정된다.

$$\hat{b}_{av} = \frac{\hat{B}}{\frac{1}{2}(\hat{F}_{y^L} + \hat{F}_{y_{ub}})}$$

집군추정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면, 검정 실선은 실제 분포, 주황 점선은 추정된 반사실적 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총 3개의 수직선이 있는데, 가운데 빨간 점선은 경계점( $y^L$ ), 양 끝의 파란 점선은 집군 구간인  $[y_{lb}, y_{ub}]$ 를 나타낸다. 업종과 귀속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을 이용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금액 기준 부근에 나타난 집군의 크기( $\hat{b}_{av}$ )는 0.082이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집군 구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총수입금액을 평균적으로 820만원(1.3%)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y_{lb}$ 와  $y_{ub}$ 는 각각 -0.25과 0.5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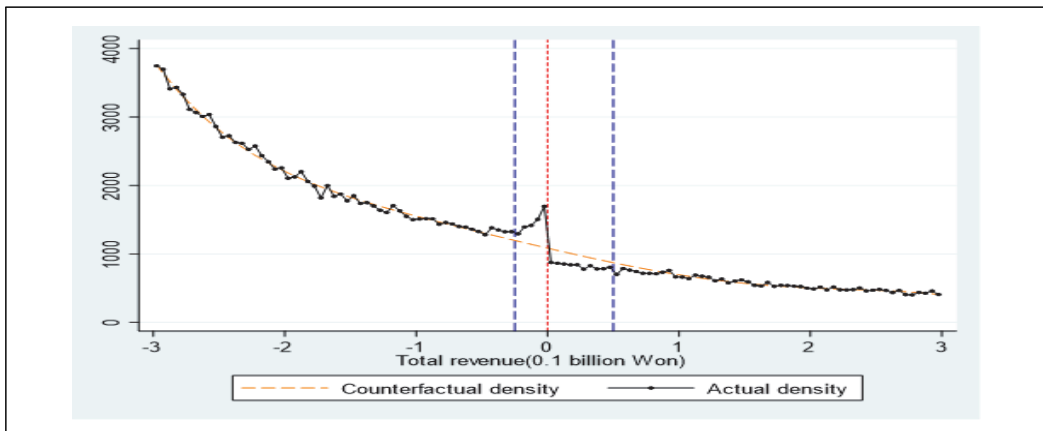
30) 집군의 크기를 금액 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구간의 크기를 곱한다(Almunia and Lopez-Rodriguez, 2018).

집군의 크기에 대한 업종별 분석 결과를 보면, 농림어업 등의 경우 0.116(0.7%), 제조업 등의 경우 0.104(1.4%),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 0.057(1.6%)이다. 다만, 업종별로 경계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정치의 차이를 단순히 업종 간의 행태반응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농림어업의 경우 관측치수가 충분하지 않아 집군이 정확하게 추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농림어업 등과 제조업 등의 업종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인화된 2018년 이전과 이후의 집군 크기는 각각 0.087(1.4%)과 0.081(1.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에 기준 수입금액이 2/3 수준으로 감소되었음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집군이 지속적으로 관측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과 같은 납세자 특성별 집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31)</sup>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남성의 집군 크기가 0.089(1.4%), 여성은 0.065(1.3%)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세제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Saez et al., 2012),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집단별 행태반응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표본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여 집군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표본을 구분한 분석에서는 집군의 크기가 각각 0.086(1.4%), 0.082(1.3%)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경기, 그 외 지역을 구분한 분석에서는 집군의 크기가 0.098(1.6%), 0.072(1.3%), 0.082(1.3%)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집군분석 결과(전체 표본)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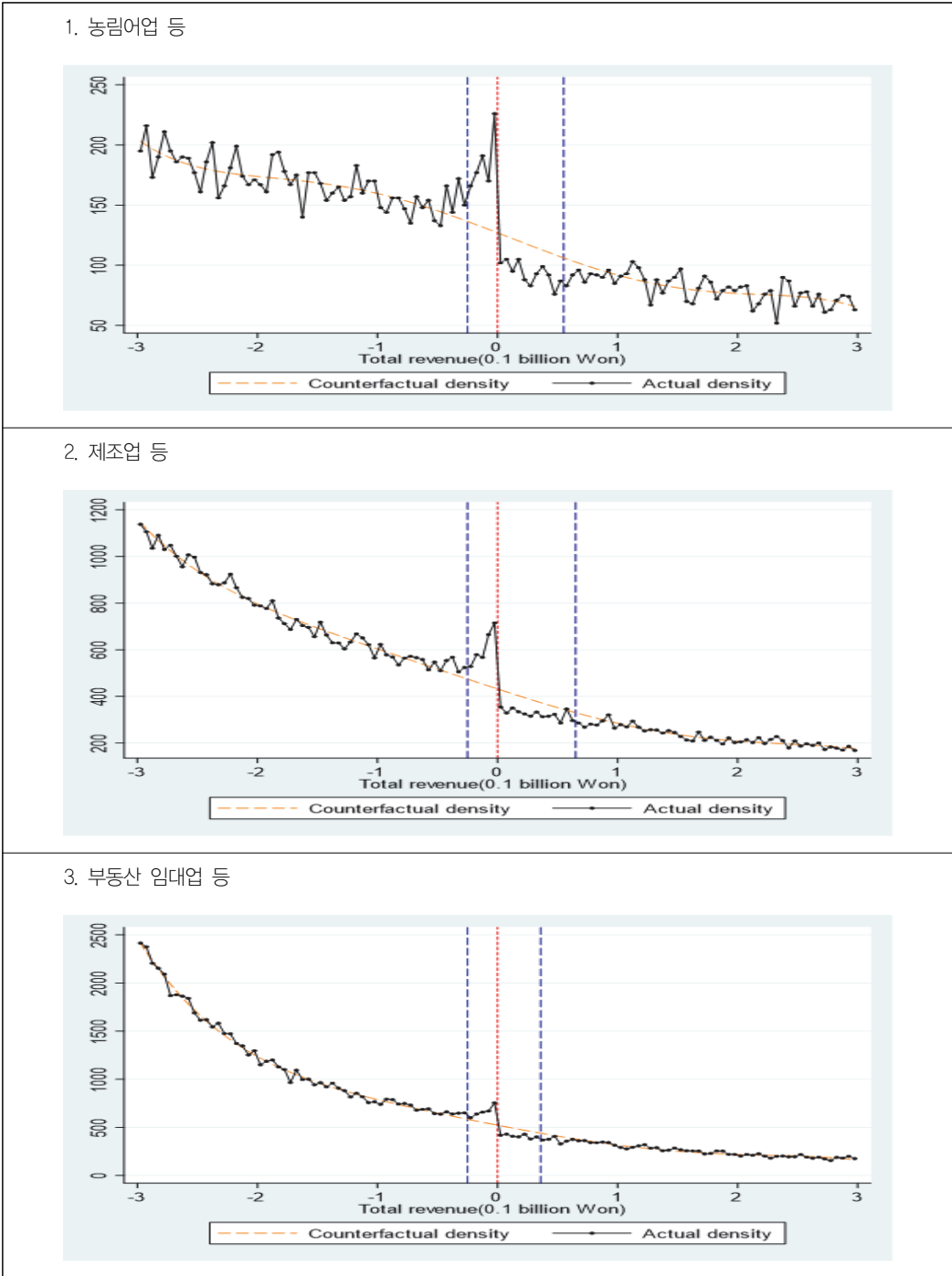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1) 분석 결과는 본고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III-7] 업종별 집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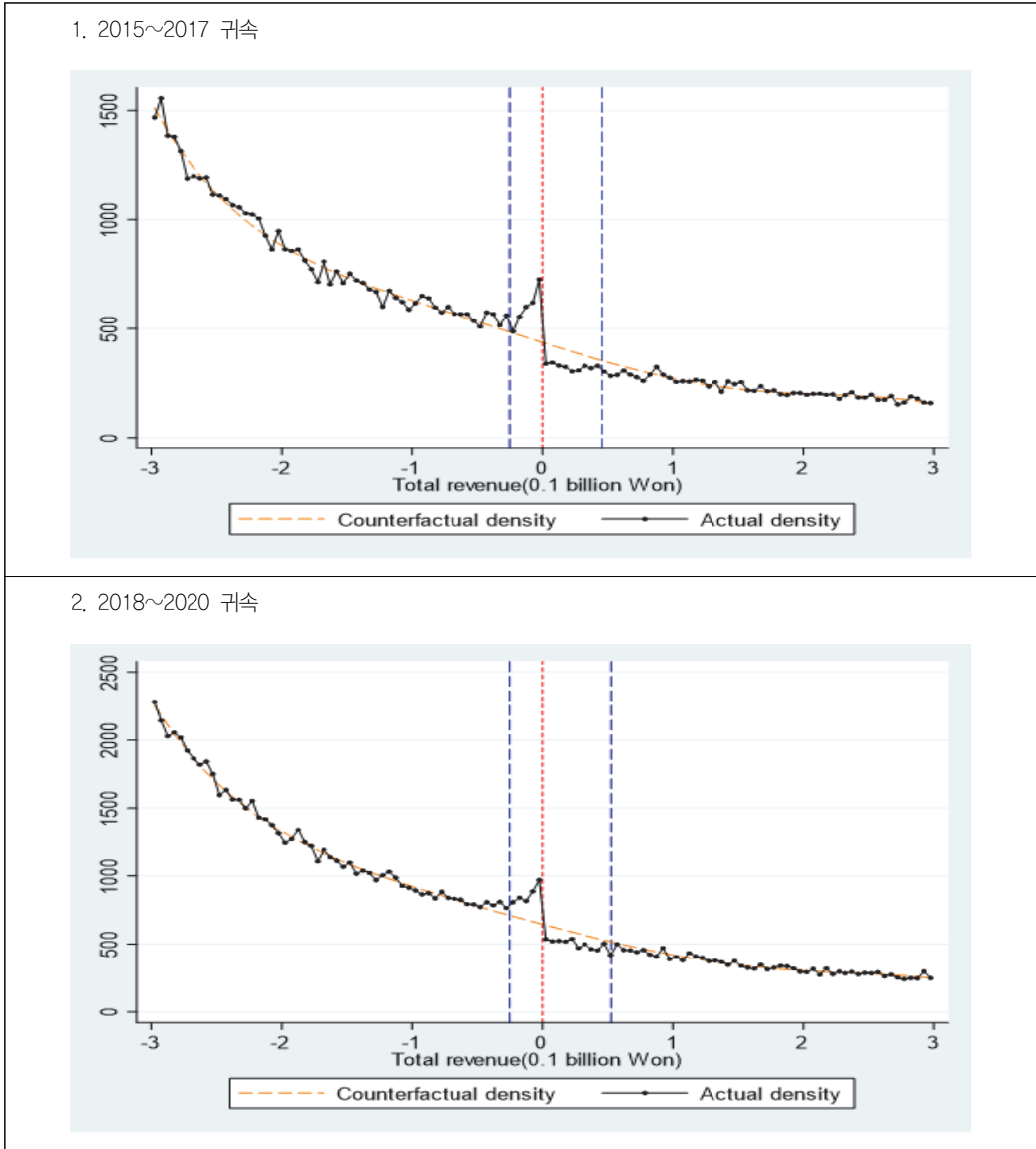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8] 시기별 집균분석 결과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집균분석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수입금액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한 수의 사업자들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대상 기준금액과 그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반응하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행태반응은

잠재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세무사 등이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세무대리인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집군이 크게 나타났다(Chetty et al., 2013).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행태반응은 더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동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제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 등 조정 비용이나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행태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120만원을 한도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비용 전액이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 또한,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집군이 제도 도입 초기에만 나타나지 않고 6년의 분석기간에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과표양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추가해서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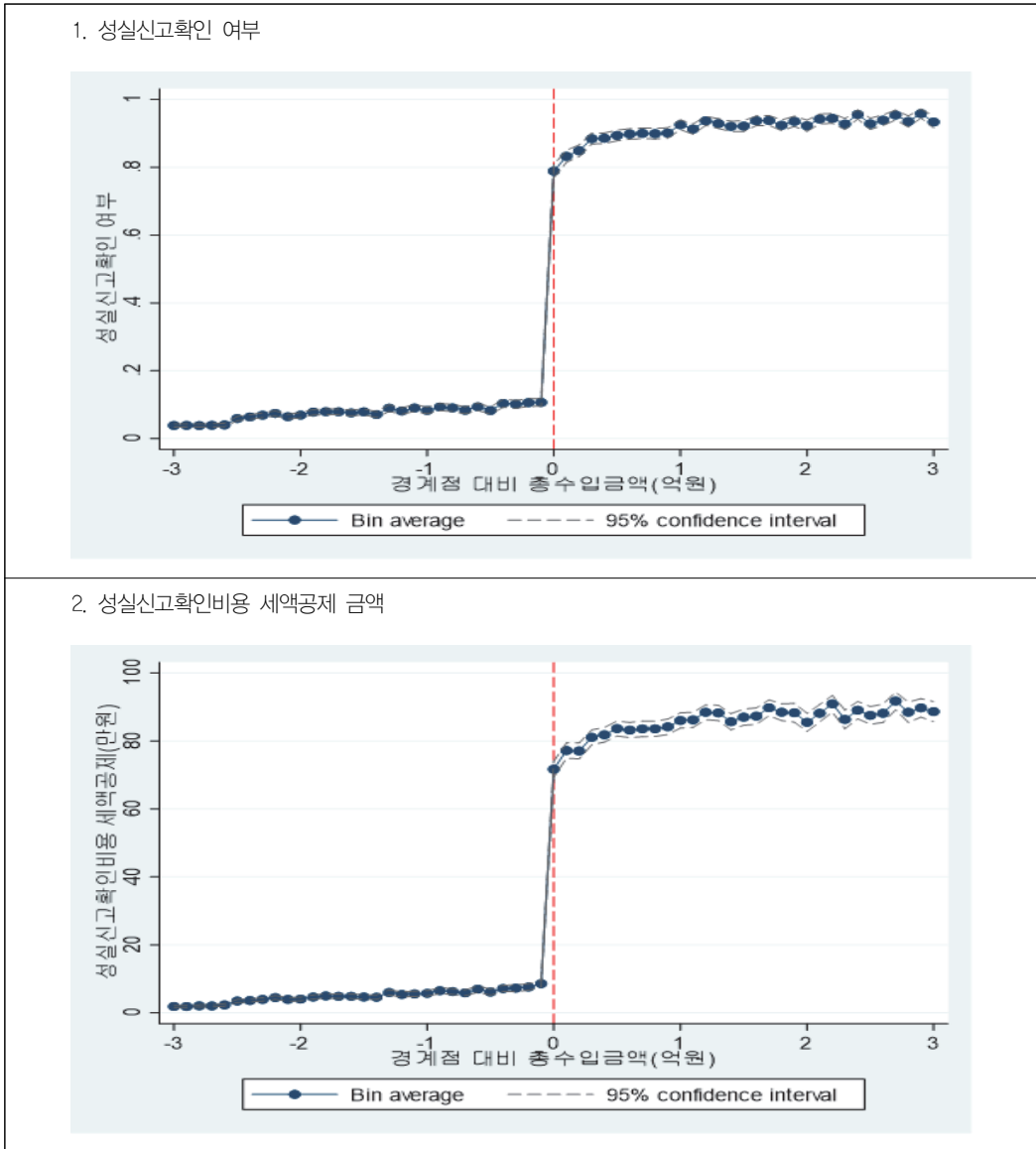
## 2. 구간 평균(bin averages)

본 절에서는 수입금액 조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계점 대비 총수입금액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여부, 필요경비 등의 변화를 살펴본다. 총수입금액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 절의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절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경계점 아래로 낮춘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경계점 부근 좌우

의 사업자들이 수입금액 조정비용, 납세순응도 등의 측면에서 이질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 회귀단절모형과 같이 경계점 부근의 좌우를 비교하여 제도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집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을 이용하는 경우 경계점 좌우에 있는 사업자들의 총수입금액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관련된 다른 특성들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림 Ⅲ-9]에서는 경계점 대비 총수입금액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여부의 변화를 살펴본다. 경계점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입금액 분포에 나타난 집군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경계점 직전 구간에서 10% 수준이고 경계점이 포함된 구간부터 80% 수준으로 급등한다. 경계점 대비 총수입금액이 증가할수록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한다. 총수입금액이 경계점보다 1억원 이상 크면 90% 정도가 성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 경계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

[그림 III-9] 경계점 좌우 성실신고확인 여부 변화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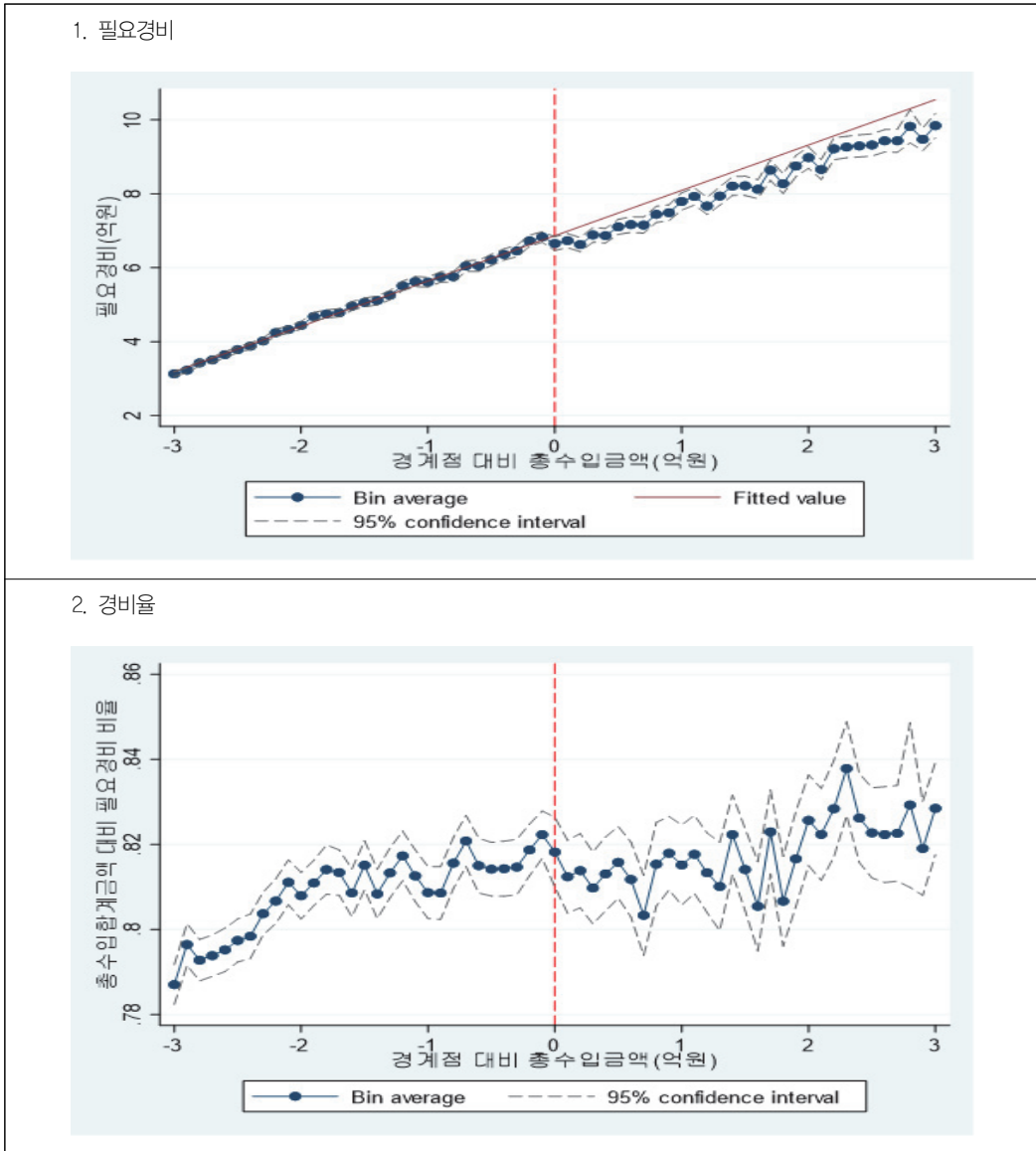
다음으로, 경계점 대비 총수입금액에 따른 평균 필요경비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 집권이 관측된 경계점 좌측  $[-0.25, 0]$  구간의 필요경비 변화를 통해 집권의 메커니즘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입금액 조정은 노동공급 등 실제 경제행위의 변화와 신고행태의 변화라는 두 가지 구분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집군이 실제 경제행위의 축소로 인한 것이라면, 수입금액을 조정하면서 필요 경비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한 집군 사업자(bunching firm)의 필요경비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계점 좌측 집군 구간에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집군 사업자의 평균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 경계점 좌측에서 나타나는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집군이 전적으로 수입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것이라면, 필요경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집군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계점 좌측 집군 구간에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sup>32)</sup> 분석 결과, 경계점 직전의 필요경비는 집군 구간을 제외하여 추정 한 경계점 좌측 추세선의 연장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기존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군 구간인 경계점 대비 총수입금액이 [-0.25, 0.5]인 구간을 제외하고 경계점 좌우의 평균 필요경비를 비교해 보면, 경계점 좌측 추세의 연장선에 비하여 경계점 우측의 필요경비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필요경비를 적게 신고한다는 descriptive evidence로 볼 수 있다. 사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보다는 비용 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수입의 경우 신용카드 활성화와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어느 정도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졌으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현금거래로 인한 비노출수입의 경우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반사실적 상황(counterfactual)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결과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구간 평균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도와 관심변수 간 인과관계를 식별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총수입금액을 조정한 사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집군 구간의 표본을 제외하면서, 총수입금액이 상당히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외에 다른 집단 간 차이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32) 필요경비의 변화 없이 수입금액만 감소할 경우 소득률이 증가하여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함께 필요경비도 어느 정도 낮추어 신고할 수 있다.

[그림 III-10] 경계점 좌우 필요경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자료에 있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정규영수증 외 기타 매출 정보를 종합소득세 자료와 연결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정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기타 매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 무통장 입금, 온라인 쇼핑몰 휴대폰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

려운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조정하여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집군이 관측된 구간(-0.25, 0)에서 정규영수증 외 기타 매출이 0인 사업자의 비중이 집군 구간을 제외한 추세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매출이 0인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하여 집군분석을 수행할 경우 집군은 전자에서만 나타나고 후자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들이 기타 매출을 낮추어 총수입금액을 경계점 아래로 축소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존재와 상관없이 기타 매출이 없는 사업자와 제도로 인하여 기타 매출을 축소시킨 사업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금액 조정의 메커니즘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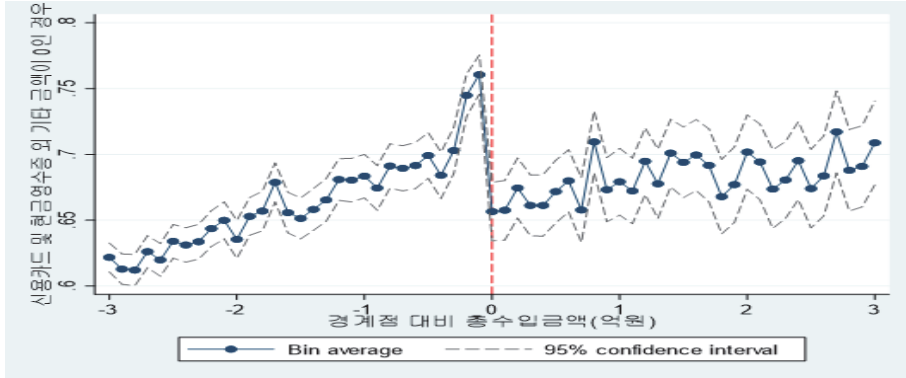
2017년 재정패널조사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부표 2>~<부표 5> 참고). 다양한 설문 항목 중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연관이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과 '타인에 의한 소득정보 제공'이 성실납세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3)</sup> 사업소득이 있는 응답자 표본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이 44.6%이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8.5%이다. 또한, '타인에 의한 소득정보 제공'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43.8%, 부정적인 답변이 15.4%이다. 즉,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증가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이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여부 및 성실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국세청에 더 정확한 소득 정보가 제공되면서 사업자의 납세순응이 제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3) 납세순응 요인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실납세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도는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과 '타인에 의한 소득정보 제공'보다 '자신의 정직성·성실성'과 '타인의 성실신고'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직성·성실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으로는 '타인의 성실신고'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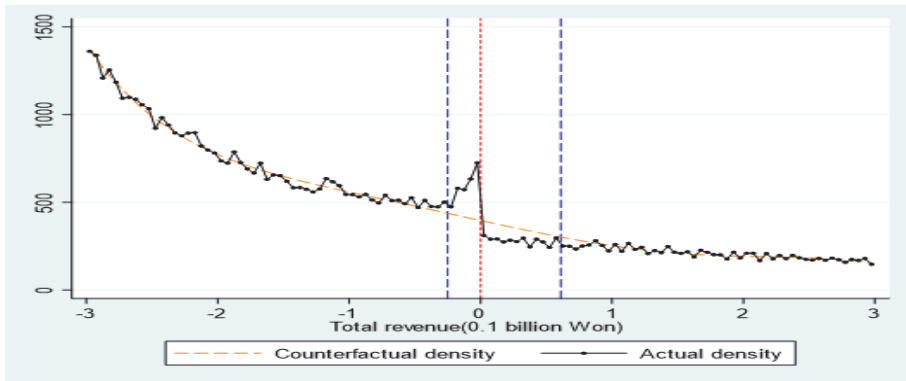
[그림 III-11] 부가가치세 자료를 연결한 분석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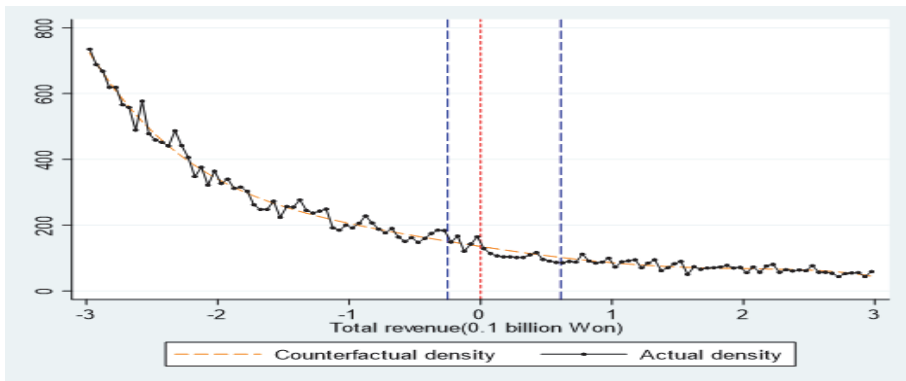
1. 경계점 좌우 기타 매출이 0인 사업자의 비중 변화



2. 기타 매출이 0인 사업자 표본의 집군분석 결과



3. 기타 매출이 0인 사업자 표본의 집군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

## IV. 마치는 글

---

본고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검토하고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와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대리인에게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제Ⅱ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을 살펴보았다. 지원 제도로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제재 수단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과태료, 직무정지 등이 있다. 제Ⅲ장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에서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집군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업종별 기준금액이 변화할 경우 집군도 그에 상응하여 관측되는 강건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여부와 필요경비 등의 경계점 부근 구간 평균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조정의 메커니즘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금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준금액의 적정성 및 추가적인 기준금액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별 납세순응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를 이용하면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탈루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수입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추가적인 기준금액 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작위 세무조사는 납세자 특성별 납세순응 현황을 파악하여 세무 당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순응 제고 정책의 확대 및 추가적인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sup>34)</sup>

---

34) 물론, 무작위 세무조사의 단점 및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정기 조사 외에 무작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관 트레이닝 및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한다. 특히, 무작위 세무조사는 같은 자원을 정기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수 확보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무작위 세무조사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고 공표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무작위 조사의 유용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 과세강화에 따른 행태반응의 경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연구는 납세순응 정책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내 문헌〉

- 구재이,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48호, 2015, pp. 91~141.
- 국세청, 「기장 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검색일자: 2022. 11. 11.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11. 11.
-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2022.
- 권성오·권성준,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권성오,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 검토」, 『재정포럼』, 제289호, 2020. 7., pp. 28~47.
- \_\_\_\_\_,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재정포럼』, 제297호, 2021. 3., pp. 8~25.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조세지출예산서』, 2011~2022,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 검색일자: 2022. 11. 11.
- 박윤수·강창희·김부열·오윤섭·이아영,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안종석·강성훈·오종현, 『소득세 Tax Gap 추정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외국 문헌〉

- Almunia, Miguel and David Lopez-Rodriguez, “Under the Radar: The Effects of Monitoring Firms on Tax Compliance,” 2015.
- \_\_\_\_\_, “Under the radar: The effects of monitoring firms on tax complia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0(1), 2018, pp. 1~38.
- Benzarti, Y., “How taxing is tax filing? Leaving money on the table because of hassle costs,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5.

- Bott, K., Cappelen, A. W. and Sørensen, E. Ø., “You’ve got mail: A randomised field experiment on tax evasion,” Discussion Paper 26/2014, Department of Economics,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2014.
- Carrillo, P., Castro, E. and Scartascini, C., “Do rewards work to maintain and increase tax compliance? Evidence from the randomization of public goods,” World Bank ABCDE 2016 Conference, World Bank, Washington, DC, 2016.
- Castro, L. and Scartascini, C.,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in the Pampa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16, 2013, pp. 65~82.
- Chetty, R., Friedman, J. N., Olsen, T., and Pistaferri, L., “Adjustment Costs, Firm Responses, and Micro vs. Macro Labor Supply Elasticities: Evidence from Danish Tax Record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2), 2011, pp. 749~804.
- Chetty, Raj, John N. Friedman, and Emmanuel Saez, “Using Differences in Knowledge across Neighborhoods to Uncover the Impacts of the EITC on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7), 2013, pp. 2683~2721.
- Coolidge, J., “Findings of tax compliance cost surveys in developing countries,” *eJournal of Tax Research*, 10(2), 2012, pp. 250~287.
- Doerrenberg, P. and Schmitz, J., “Tax compliance and information provision: A field experiment with small firms,” IZA Discussion Papers 9013,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2015.
- Dwenger, N., Kleven, H., Rasul, I. and Rincke, J.,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s for tax compliance: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German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8(3), 2016, pp. 203~232.
- Fellner, G., Sausgruber, R. and Traxler, C., “Testing enforcement strategies in the field: Legal threat, moral appeal and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1(3), 2013, pp. 634~660.
- Khan, A. Q., Khwaja, A. I. and Olken, B. A., “Tax farming redux: Experimental evidence on performance pay for tax collecto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1), 2016, pp. 219~271.
- Kleven, Henrik Jacobsen, “Bunching,”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016, pp. 435~464.

- Kleven, Henrik J. and Mazhar Waseem, "Using notches to uncover optimization frictions and structural elasticities: Theory and evidence from Pakista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8(2), 2013, pp.669~723.
- Le Maire, D., Schjerming, B., "Tax bunching, income shifting and self-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7, 2013, pp. 1~18.
- Luttmer, E. and Singhal, M., "Tax moral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4), 2014, pp. 149~168.
- Mahangila, Deogratius Ng'winula, "The impact of tax compliance costs on tax compliance behaviour", *Journal of Tax Administration*, 3(1), 2017, pp. 57~81.
- Mascagni, G., Nell, C., and Monkam, N., "One size does not fit all: A field experiment on drivers of compliance and delivery methods in Rwanda," ICTD Working Paper N. 58, Brighton, UK, 2017.
- OECD, *Tax Administration 2015*, 2015.
- Ortega, D. and Scartascini, C., "Don't blame the messenger: A field experiment on delivery methods for increasing tax compliance," Mime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6.
- Sanchez, Gonzalo E., "The impact of low-cost intervention on tax compliance: Regression discontinuity evidence," 2014.
- Saez, Emmanuel, "Do Taxpayers Bunch at Kink Point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2(3), 2010, pp. 180~212.
- Saez, E., Slemrod, J., and Giertz, S. H.,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1), 2012, pp. 3~50.
- Slemrod, Joel.,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7(4), 2019, pp. 904~954.
- Slemrod, J., Blumenthal, M. and Christian, C., "Taxpayer response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audit: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3), 2001, pp. 455~483.
- Torgler, B., "Moral suasion: An alternative tax policy strategy? Evidence from a controlled field experiment in Switzerland," *Economics of Governance*, 5(3), 2004, pp. 235~253.

## 부록

〈부표 1〉 대기업 납세자 판단 기준(2013)

국가	기준
<b>OECD countries</b>	
호주(Australia)	매출액 AUD 250m 이상
오스트리아(Austria)	매출액 EUR 9.68M 이상
벨기에(Belgium)	(1) 공시 의무가 있는 대규모 납세자가 포함된 기업 (2) 은행, 보험회사,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등 특정 경제 부문에 속한 납세자 (3) 매출액 EUR 7.3m 이상이며 자산 가치 EUR 3.65m 이상 (4) 직원수: 100명 초과 (5) 하나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가 포함된 VAT unit
캐나다(Canada)	(1) 소득세: 연간 총수입 CAD 250m 이상 (2) 간접세(GST/HST): 연간 총수입 CAD 100m/1 이상
칠레(Chile)	최근 3년간 매출액 90,000UTA 이상, 과세 대상 자본은 최근 3개 세무 연도의 매출액은 110,000UTA 이상
체코(Czech Republic)	(1) 과세 연도 매출이 CZK 20억 초과 (2) 은행 또는 은행 지점 (3) 보험회사 또는 지점 (4) 재보험 회사 또는 지점 (5) 그룹을 구성하는 사업체 중 (2)~(4)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6) General Financial Directorate(GFD)에 의해 임명된 법인(legal entity) 또는 자연인(natural entity)
덴마크(Denmark)	매출액 DKK 30억 이상, 직원 수 250명 이상
핀란드(Finland)	매출액 EUR 50m 이상
프랑스(France)	매출액 EUR 400m 이상 또는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관련된 회사
독일(Germany)	(1) 상업: EUR 7.3m 이상 매출 또는 EUR 280,000 이상 이익 (2) 제조업: EUR 4.3m 이상 매출 또는 EUR 250,000 이상 이익 (3) 프리랜서: EUR 4.7m 이상의 매출 또는 EUR 580,000 이상 이익 (4) 금융기관: EUR 140m 이상 실제 순자산 또는 EUR 560,000 이상 이익 (5) 보험회사: EUR 30m 이상 보험료 수입 (6) 농업 및 임업 기업: 경제적 가치가 EUR 230,000 이상인 토지 또는 EUR 125,000 이상의 이익 (7) 기타 기업: EUR 5.6m 이상 매출 또는 EUR 330,000 이상 이익
그리스(Greece)	매출액 EUR 20m 이상, 매출액이 EUR 10m 이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은행, 보험 및 기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기업과 국경을 넘는 거래를 하는 납세자
헝가리(Hungary)	대규모 납세자는 평균 과세능력에 따라 최우선납세자로 분류되며 은행과 보험회사가 포함됨
아일랜드(Ireland)	(1) 매출액 EUR 162m 초과 또는 납세금액 EUR 16m 초과 (2) 준국유 기업 (3) 금융 서비스 부문 (4) 특정 부문의 대규모 기업체
이탈리아(Ireland)	매출액 EUR 100m 이상
일본(Japan)	자본금 JPY 100m 이상

〈부표 1〉의 계속

국가	기준
멕시코(Mexico)	총수입 645m pesos 이상인 기업, 금융기관, 공시를 하는 기업, 외국 정부, 국제 기구, 외교관, 중앙집권화된 연방 공공행정, 국영 석유 회사, 연방 사회보장기관, 비거주자, 국제 조세 제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예: 이전 가격, 과소 자본)
네덜란드(Netherlands)	(1)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2) 표준 가중 재정 가치(standard weighted fiscal worth) EUR 25m 초과 (3) 표준 가중 재정 가치 EUR 12.5m을 초과하는 외국 모 회사 (4) 표준 가중 재정 가치 EUR 12.5m을 초과하는 5개 이상의 해외 자회사를 가진 회사 (5) 표준 재정 가치 EUR 37.5m을 초과하는 비영리 조직 (6) 금융(은행, 보험), 석유 및 가스(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및 에너지 공급 산업 회사 (7) 기타 납세자(복잡한 문제가 존재하거나 납세자가 세간의 이목을 끌거나 일정 수준의 재정적 위험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New Zealand)	총매출액이 NZD 100m을 초과하거나 전문 산업 업종
노르웨이(Norway)	매출/자산이 NOK 10bn을 초과(매출/자산이 NOK 30bn을 초과하는 경우 the Large Taxpayer Office에서 산정됨)
포르투갈(Portugal)	매출액 EUR 200m 이상 비금융기업, 매출액 EUR 100m 이상 보험회사, 신용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 납세액 EUR 20m 이상 기업
폴란드(Poland)	자본과세 기업,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 및 채권의 공공거래를 제공하는 기관, 연기로 운영되는 기관, 전년도 연간 순이익이 500만 이상인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 해외에 소재한 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비거주자가 지분을 보유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매출액 EUR 40m 초과, 외국 은행 및 지점, 외국 보험회사 및 지점, 외국 재보험 회사 및 지점
슬로베니아(Slovenia)	매출액 EUR 50m 이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사행산업 관련 회사, 증권거래소 증권 중개 회사, 투자 회사, 운용 회사, 연금 회사, 중앙청산기구
스페인(Spain)	매출액 EUR 100m 이상, 대기업, 주요 은행 및 보험회사
스웨덴(Sweden)	직원 수 800명 이상, 연간 급여 SEK 50m 이상, 스웨덴 금융감독청(Swedish Financial Supervisory)이 감독하는 회사
튀르키예(Türkiye)	연간 수익, 총자산 또는 자본이 매년 공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 및 기준에 관계 없이 금융 부문(은행, 보험 회사 및 브로커 등)
영국(U.K.)	매출액 GBP 600m 이상
미국(U.S.A.)	자산 USD 10m 초과 subchapter S 기업 및 파트너십, 외국 기업 및 특정 외국 파트너십
<b>Non-OECD countries</b>	
아르헨티나(Argentina)	세금 과세, 세금 납부, 연간 매출, 부가가치세 부채, 경제 부문,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브라질(Brazil)	총소득 BRL 120m 이상, 총부채 BRL 12m 이상, 급여 BRL 21m 이상, 사회보장부채 (social security debts) BRL 7m 이상
불가리아(Bulgaria)	수입 BGN 3m 이상 또는 환급된 세금 BGN 2m 이상인 과세대상자, 은행이나 보험회사
중국(China)	지역 간(Cross-regional) 사업, 복잡한 세금 문제 또는 특정 규모의 세수
콜롬비아(Colombia)	이전 과세 연도에 납부한 총세금(GT, VAT 및 원천징수)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납세자
코스타리카(Costa Rica)	지난 3개 과세 기간 평균 (1) 세금 CRC 250m 이상 (2) 소득 CRC 40bn 이상 (3) 총자산 CRC 40bn 이상

〈부표 1〉의 계속

국가	기준
크로아티아(Croatia)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1) 수익 HRK 150m 이상 (2) 수익이 HRK 15m 이상인 보험, 리스 및 통신 사업 또는 은행(이익에 관계 없음) (3) 예상 수익이 HRK 150m을 초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이프러스(Cyprus)	세수 및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자만 적용
인도(India)	소비세 Rs 50m 이상, 서비스세 Rs 50m 이상, 법인 소득세 Rs 100m 이상을 납부한 5개 주요 도시의 납세자
라트비아(Latvia)	(1) 연간 순 매출액 또는 VAT 거래 대금 LVL 3m 이상 (2) 납부한 세금 LVL 250,000 초과 (3) 연간 납부한 세금이 LVL 3m 이상인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지원 기관 (budget-funded institutions) (4) 도박 및 복권을 취급하는 신용 기관, 보험 회사, 납세자
리투아니아(Lithuania)	매출액 LTL 60m 이상, 직원 수 10명 초과, 금융 및 보험 업종
말레이시아(Malaysia)	특정 업종
모로코(Morocco)	매출액 MAD 50m 이상
러시아(Russia)	이익 RUB 20bn 이상, 연간 연방세 RUB 1bn 이상, 매출액 RUB 300m 이상 통신 및 물류 분야, RUB 300m 이상 연방세를 납부하는 보험 및 은행 분야, 총자산가치 RUB 20bn 이상, 직원 수 100명 이상 법인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1) 주요 산업/활동(예: 석유, 은행 등), (2) 자기자본 SR 100m 이상 (3) 총소득 SR 100m 이상
싱가포르(Singapore)	(1) 법인소득세: Net tax assessed, turnover, complexity (2) GST(Goods and Services Tax): 연간 SGD 100m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매출액 ZAR 1bn 이상, 매출액 ZAR 250m 이상 광업 및 금융 서비스업, 매출액 ZAR 250m 이상 가진 일부 다국적 기업
태국(Thailand)	매출액 THB 2bn 이상

자료: OECD(2015)

〈부표 2〉 세금신고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명, %)

문항	매우 영향을 준다	대체로 영향을 준다	보통이다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계
귀하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나 자신의 정직성 및 성실성	1,641 (22.2)	2,960 (40.0)	1,937 (26.2)	732 (9.9)	7,394 (100.0)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1,112 (15.0)	2,784 (37.7)	2,560 (34.6)	772 (10.4)	7,394 (100.0)
	보통의 일반적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1,074 (14.5)	2,672 (36.1)	2,647 (35.8)	859 (11.6)	7,394 (100.0)
	세무조서에 대한 가능성	899 (12.2)	2,266 (30.7)	2,714 (36.7)	1,127 (15.2)	7,394 (100.0)
	국세청에 타인이 나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679 (9.2)	2,414 (32.7)	3,086 (41.7)	1,002 (13.6)	7,394 (100.0)
	정부의 공공재화 서비스(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1,023 (13.8)	2,768 (37.4)	2,773 (37.5)	694 (9.4)	7,394 (100.0)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	1,392 (18.8)	2,466 (33.4)	2,638 (35.7)	707 (9.6)	7,394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2017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정리

〈부표 3〉 세금신고에 대한 인식(급여소득자)

(단위: 명, %)

문항	매우 영향을 준다	대체로 영향을 준다	보통이다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계
귀하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나 자신의 정직성 및 성실성	975 (22.7)	1,727 (40.2)	1,120 (26.0)	416 (9.7)	4,301 (100.0)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668 (15.5)	1,632 (37.9)	1,486 (34.6)	421 (9.8)	4,301 (100.0)
	보통의 일반적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663 (15.4)	1,570 (36.5)	1,521 (35.4)	471 (11.0)	4,301 (100.0)
	세무조서에 대한 가능성	534 (12.4)	1,309 (30.4)	1,545 (35.9)	659 (15.3)	4,301 (100.0)
	국세청에 타인이 나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419 (9.7)	1,387 (32.3)	1,772 (41.2)	600 (14.0)	4,301 (100.0)
	정부의 공공재화 서비스(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592 (13.8)	1,606 (37.3)	1,649 (38.3)	377 (8.8)	4,301 (100.0)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	804 (18.7)	1,434 (33.3)	1,556 (36.2)	395 (9.2)	4,301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2017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정리

〈부표 4〉 세금신고에 대한 인식(사업소득자)

(단위: 명, %)

문항	매우 영향을 준다	대체로 영향을 준다	보통이다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계
귀하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나 자신의 정직성 및 성실성	344 (21.0)	668 (40.8)	420 (25.7)	180 (11.0)	1,636 (100.0)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226 (13.8)	611 (37.4)	572 (35.0)	195 (11.9)	1,636 (100.0)
	보통의 일반적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201 (12.3)	603 (36.9)	595 (36.4)	214 (13.1)	1,636 (100.0)
	세무조서에 대한 가능성	204 (12.5)	525 (32.1)	604 (36.9)	249 (15.2)	1,636 (100.0)
	국세청에 타인이 나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140 (8.6)	575 (35.2)	670 (41.0)	217 (13.3)	1,636 (100.0)
	정부의 공공재화 서비스(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231 (14.1)	610 (37.3)	590 (36.1)	179 (10.9)	1,636 (100.0)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	303 (18.5)	555 (33.9)	559 (34.2)	182 (11.1)	1,636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2017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정리

〈부표 5〉 조세·세무 행정 평가(급여소득자)

(단위: 명, %)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0.4)	669 (15.6)	1,476 (34.3)	1,671 (38.9)	470 (10.9)	4,301 (100.0)
귀하는 우리나라의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1 (0.7)	479 (11.1)	640 (14.9)	1,661 (38.6)	1,490 (34.6)	4,301 (100.0)
귀하는 현행 조세제도(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 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잘모르겠다	합계
	111 (2.6)	2,663 (61.9)	456 (10.6)	392 (9.1)	679 (15.8)	4,301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2017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정리

## ■ 저자약력

권성오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nnecticut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

---

2022년 12월 27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I S B N 979-11-6655-172-7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